#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노르웨이 -

이덕난



# 비교법제 연구 13-20-9-5

#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노르웨이 -

이덕난



#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노르웨이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 Norway –

연구자: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Lee, Deok-Nan

2013. 10. 4.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한국사회에서 교육분야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의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는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 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주로 직접적인 재 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 교육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 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시 사점을 도출·제시하고자 하였음.
  - 노르웨이는 법체계가 매우 독특한 국가이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니어서 선행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사회복지 및 교육복 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이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Ⅱ. 주요 내용

□ 노르웨이의 학교제도는 '유아교육 단계'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중학교 단계',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단계', '고등교육 단계' 등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 「헌법」에서 교육 및 교육복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근 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 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고, 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 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됨.
- □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초·중학교의 10년 동안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고, 이 기간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 로 규정하였음.
  -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단계는 아니나,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국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 교육정책에 관한 상당한 권 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도 함께 존중하고 있음.
  - 학생의 통학과 숙소, 등교 후 및 하교 시의 안전 및 보호 등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립대학은 사 실상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복지 발전을 매우 강조하였음.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교육지 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로 규정하였음.
- □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무상제공 범위와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제공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재검토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 거나 적게들면서도 학생·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Ⅲ. 기대효과

- □ 교육복지정책의 대상과 소요예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새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안 정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교육복지법제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입법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함.
- ♣ 주제어 : 노르웨이, 교육복지, 교육복지법제, 의무교육, 무상교육, 학습환경, 학생안전, 교육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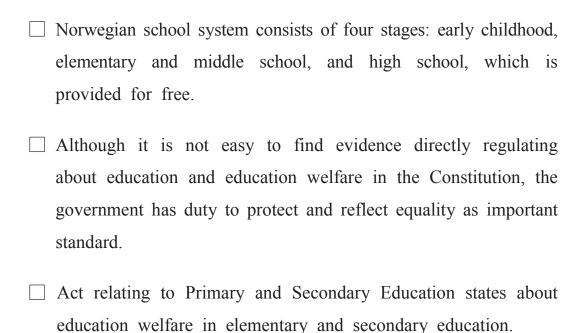
## **Abstract**

# I. Background and objective

| The major project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clude  |
|---|
| a number of education welfare related projects, and Korean      |
| society may increase the policies to expand support for welfare |
| in education in the future.                                     |
| Through comparative study regarding Norwegian education welfare |
| legislation, which was scarcely studied in Korea while having   |
| been establishing education welfare system, this study tried to |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education welfare.

#### $\coprod$ . Contents



| $\circ$ | The Act specifically states students' right regarding their commute to  |
|---------|---|
|         | school, safety and protection in and out of school.                     |
|         | Act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stipulates         |
|         | about education welfare in higher education.                            |
| 0       | Higher education is not for free. However, national universities        |
|         | provides free education in fact, and private universities also discount |
|         | part of school tuition.   |
|         |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on Norwegian education welfare            |
|         | legislation is as follows:  |
| 0       | Practicing education welfare that can increase satisfaction and effects |
|         | both of students and parents on education in the preferential basis,    |
|         | by reconsidering its objective and plan to proceed is important.        |
|         |   |

# **Ⅲ.** Expectation

- ☐ This study provides useful legislative and policy sources contributing in order to make strategies to establish the new administration's goal and proceeding plan for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to draw plan for building up effective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 New word: Norway, education welfare, education welfare legislation, compulsory education, free education, study environment, student safety, education objective

# 목 차

| 요 약 문                      | 3  |
|----------------------------|----|
| Abstract ····              |    |
|                            |    |
| 제 1 장 서 론                  | 13 |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5 |
| 제 2 장 노르웨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 17 |
| 제 1 절 복지정책 : 노르딕 복지모델      | 17 |
| I . 노르웨이의 복지제도             | 17 |
| Ⅱ. 노르웨이의 정치                |    |
| Ⅲ. 노르웨이의 경제                | 19 |
| IV. 노르웨이의 사회 ·····         | 19 |
| 제 2 절 교육제도                 | 20 |
| I. 학 제 ·····               | 20 |
| Ⅱ.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 24 |
| Ⅲ. 소외계층 지원교육               | 27 |
| 제 3 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 31 |
| 제 1 절 교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 31 |
| I . 헌법의 특징                 | 31 |
| Ⅱ. 교육복지법제의 헌법적 근거          | 33 |

| 제 2 절 교육관련 주요 법령34                                |
|---|
| 제 3 절 초·중등교육법 ················38                  |
| I. 체 계 ··································         |
| Ⅱ. 주요내용42   |
| Ⅲ. 평 가53  |
| 제 4 절 고등교육법54                                     |
| I. 체 계 ······54                                   |
| Ⅱ. 주요내용57   |
| Ⅲ. 평 가61  |
|   |
| 제 4 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63                        |
| 제 1 절 중학교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합의 도출 및 입법화63       |
| 제 2 절 무상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64                    |
| 제 3 절 다양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 65             |
| 제 4 절 교육복지의 목표 및 우선순위 재검토65                       |
| 제 5 절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66                 |
| 제 6 절 고등교육단계의 학습 환경 및 학생 복지·안전 관련<br>입법 및 정책 마련67 |
|   |
| 제 5 장 결 론71                                       |
|   |
| 참 고 문 헌73   |

| [부록]7:  |
|---|
| 부록1. 「초·중등교육법」[1998년 제정, 2011년 개정] ········ 7 |
| 부록2.「고등교육법」[1998년 제정, 2011년 개정]122            |
|   |

# 제1장서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2년 대통령선거시 새누리당의 공식 공약집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대선 공약집에는 '0~5세 보육 및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농산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사교육비경감 정책 추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육분야공약 24개 가운데 11개에 해당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중요도가 매우 높다.

이 공약들 가운데 대부분이 박근혜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채택 및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의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를 살펴보면,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은 크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가운데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경감'에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교 무상교육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등 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에는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중심 수업,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학교폭력 및 학생위

험제로환경 조성 등 학교교육(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등)의 과정에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교육분야의 복지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확대되고, 학교제도 및 교육과정, 학교상담, 학교보육 등을 개선하여 교육복지제도를 구축하려는 정책이 검토 및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제시하고자 한다.

노르웨이는 사회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 중의 하나이고,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공식적인 국명은 노르웨이왕국(Kingdom of Norway)이고, 루터복음교(전체 국민의 약 94%)를 국교로 지정하였다. 인구는 487만명(2010.1. 기준)으로 남한의 약 1/10이고, 국토 면적은 38.7만㎢로 한반도의 약 1.7배이다.

노르웨이는 교육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법체계가 매우 독특한 국가이어서 교육복지 법제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국민투표 부결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던 계획이 무산됨으로 인해유럽연합 회원국 중심의 유럽 법제연구에서도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노르웨이의 교육법제 및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이 과거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북유럽의 대표적인 교육복지국가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복지를 탄탄하게 유지해온 배경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교육복지법제를 우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글에서는 노르웨이의 교육제도와 정치·경제·사회적 특징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고자 한다.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범위는 교육복지의 헌법상 근거, 초·중등교육 단계의 핵심 법률인 「초·중등교육법」(「Act of 17 July 1998 no. 61 relating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the Education Act), 1998년 제정, 2011년 개정)의 교육복지 관련 조항, 고등교육 단계의 핵심 법률인 「고등교육법」(「Act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2005년 개정)의 교육복지 관련 조항으로 설정하였다.

# 제 2 장 노르웨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 제 1 절 복지정책: 노르딕 복지모델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노르웨이의 교육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의 복지제도와 정치·경제·사회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노르웨이의 복지제도1)

노르웨이는 1967년 1월 1일에 사회보장법(National Insurance Act)을 발효시켰다. 이때 발효된 사회보장법은 이전에 시행되었던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제정되면서 노르웨이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노르웨이 국가보험제도의 종류는 ①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Insurance), ②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③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④ 직업재해보험(Occupational Injuries Insurance), ⑤ 출산・아동보험 등으로 대별된다. 이로써 노인연금, 의료혜택(질병, 신체적 불구, 임신, 출생 등), 구호금 지원, 실업자・무능력자・직업상해자・기타 대상자(과부, 홀아비,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사망 시 지원등에 관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자는 국적에 관계 없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2012년 현재 노르웨이 총인구의

<sup>1)</sup> 외교부, 노르웨이 개황, 2012.8.

20%인 110만 명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90만 명이 노령연금 대상자이며, 잔여 20만 명은 재활보조금, 출산수당 또 는 병가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광범위한 의료보호 혜택을 위해 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국민의료 기여금과 고용주의 고용세(Payroll Tax)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병가 보상금 및 장애자 자격 신청자가 급증하여 복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자, 복지제도운영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2011년 1월 1일 연금법을 개정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석유기금 조성·운영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Ⅱ. 노르웨이의 정치

노르웨이의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이다. 국가원수는 Harald 5세 국왕(1991.1. 즉위)이고, 2009년 10월에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좌파 연정(노동당, 사회주의좌파당, 중앙당 등 3당이 총 169석 가운데 86석)이 결성되어 노동당 출신이 총리와 외교장관을 맡고 있다. 국왕의 권한이 명목상인지 아니면 실질적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1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72년과 1994년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EC 가입안과 EU 가입안이 각각 부결되었고, 이로 인해 EC와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가주권의 이양 반대라는 정치적 이유와 석유, 어업자원 등 부존자원에 대한 주권포기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르웨이는 1450-1814년까지 360여 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고, 1814-1905년까지 90여 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권문제에 민감하다.

다만, EU 가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EU의 대외 및 안보 정책에 동참하고 경제협력 등 EU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신속대응군에 자국군 참여를 결정하였다.2)

### Ⅲ. 노르웨이의 경제

2012년 IMF 기준으로 GDP는 5,015억불(세계23위)이고, 1인당 GDP는 9만9,664불(세계3위)이다. 인구수가 한국의 약 1/10에 불과할 정도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인정된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와 천연가스, 해운, 조선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선박과 운송장비, 석유 등이다. 2009년 기준으로 교역량은 2,663억불이고, 수출액은 1,613억불이며 수입액은 1,050억불이다.

원유와 가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노르웨이 GDP의 25%이고 국가 재정 수입의 33% 수준이다. 수산업은 유럽 최대 규모로 인정받고 있으며, 연안 어업 및 양식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생산어종은 청어, 고등어(포획), 연어, 송어(양식) 등이고, 연간 수출액은 50억불이며 그가운데 55%를 EU 에 수출한다.

## Ⅳ. 노르웨이의 사회3)

노르웨이는 양성평등 및 세계적인 복지제도를 구현한 국가로 평가된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과 사회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직장에서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평등지위 옴브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양성평등법은 조직에서 한쪽 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 신규 직원 채용 시 자격이 동등하다면 소수 성별 후보를 우

<sup>2)</sup>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 2010.8, p.134.

<sup>3)</sup>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의 글, p.136-137.

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주요기업의 이사진 구성 시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 '남녀평등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노르웨이는 여성 국회의장과 총리를 배출하였고,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 협의회 등 공직 임명시 할당제를 도입해왔다. 2010년 기준으로 장관 17명 가운데 9명이 여성이고, 국회의원 169명 가운데 66명이 여성이다.

노르웨이는 1997년 2월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각종 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넓은 범위의 의료보호 대상자, 노인, 실업 자,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91년 국영연금기금 을 설립하여 석유개발로부터 얻은 수입의 전액을 적립하였다.

## 제 2 절 교육제도

## I. 학 제

## 1. 종 합

노르웨이의 학제는 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및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종합대학과 전 문학교)으로 구분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학교제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크게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유아교육 단계'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중학교 단계'(초등교육+전기중등교육),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성격의 '고등학교 단계'(후기중등교육), '고등 교육 단계' 등 4가지 교육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성인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 고등교육 단계에 '성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학교나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민중고등학교(Folk High Schools, 民衆高等學校)에 입학할 수 있다. 민중고등학교는 19세기에 덴마크 출신의 니콜라이 그룬트비히가 민중을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해 창시한 학교이고, 주로 서유럽과 북유럽 지역에 있으며, 노르웨이에는 1860년대에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자기계발에 목표를 두고 기숙형으로 운영한다.

### 2. 유아교육(Pre-school)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유치원에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약 6,440개(사립유치원 비율은 약 55%)의 유치원이 있고, 약 235,000명의 유아들(사립 유치원 학생 비율은 약 46%)이 재학 중이며, 교원은 약 69,700명이다(2006년 노르웨이 통계). 지방교육청은 유치원을 지도하는 데에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공공 기관들이 기초 지자체 내의 모든 인가된 유치원과 동등한 기반의유아교육 여건을 갖추도록 관리한다.

[표 1] 노르웨이의 학교제도

| 연령 | 학년                         | 구분       |                                   |                   |                      | 五章                   | 육 체제     |               |                 |           |
|----|----------------------------|----------|-----------------------------------|-------------------|----------------------|----------------------|----------|---------------|-----------------|-----------|
|    |                            |          | 박사(                               | 3년)               | 박<br>(기간             | 사<br>미정)             |          |               |                 |           |
|    |                            | 고 등      | 신학,<br>심리학,<br>의학,<br>수의학<br>박사과정 | 석사<br>과정          | 석사<br>과정<br>학사<br>과정 | 석사<br>과정<br>학사<br>과정 |          | 석사과정          |                 | 2년의<br>경력 |
| 19 | 14                         | 교<br>육   | 종합<br>/단과<br>대학                   | 종합/<br>단과<br>대학   | 종합<br>/단과<br>대학      | 단과<br>대학             | 학사과정단과대학 | 학사과정<br>종합/단과 | 성인<br>교육<br>과정  | 직업<br>교육  |
|    |                            | 후기       | 직업                                | 훈련                |                      |                      | 7        |               | 성인              | 민중<br>고등  |
| 18 | 13<br>12<br>11             | 중등<br>교육 | 직업금                               | 훈련<br>Vg2<br>Vg1: |                      | Vg3                  | 재교육      | 교육받을<br>권리    | o 년<br>교육<br>과정 | 학교        |
| 15 | 10<br>9<br>8               | 호<br>•   |                                   | 전기중               | 등교육(중                | 중학교)                 | -        |               |                 |           |
| 12 | 7<br>6<br>5<br>4<br>3<br>2 | 중학교교육    | 청인<br>의무교육 교육<br>초등교육(초등학교)<br>과정 |                   |                      |                      |          |               |                 |           |
| 6  | 1                          |          | 유치원(유아교육·보육)                      |                   |                      |                      |          |               |                 |           |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EDUCATION IN NORWAY 2007」, p.25.

<sup>4)</sup> General Subjects Supplement.

<sup>5)</sup> 노르웨이어로 Videreg ende skole의 줄임말이다. 영어로 Upper secondary school, 즉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과정)이라는 뜻이고, 학년은 Vg1에서 Vg3까지 있다.

####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만 6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7년의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한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전기 중등교육(3년)을 이수한다. 의무교육단계는 초등학교(7년)와 중학교(3년) 과정을 합한 10년동안으로 규정되었다. 약 3,100여개의 초·중학교(사립학교의 비율은약 4.7%)가 있고,약 620,000명의 학생들(사립 비율은 2.2%임)이 재학하며,약 64,000명의 교원이 근무한다. 유치원 교육과 함께 지방교육청이 초·중학교 교육을 운영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 4.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교육(3-4년)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양을 쌓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는 교육단계이다. 직업훈련을 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2년간의 교육을이수한 후에 취업을 한다. 450여개의 고등학교(사립학교의 비율은 16%임)가 있고, 약 190,000명의 학생(사립 비율은 6%임)이 재학하며, 약34,000명의 견습생이 있고, 교원은 약23,000명이다. 유·초·중학교와달리 주 정부가 후기 중등교육과 직업훈련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종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할수 있고, 3학년부터 1-2년 동안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취업을 할수도 있다.

### 5. 고등교육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의 학부과정에 입학한 후에 박사과정까지 이수하는 경로가 있고, 학부부터 석사까지 이수한 후에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로도 있다. 학사와 석사, 박사를 각각 이 수할 수도 있고, 단과대학 입학 후 학사과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종학대학 및 단과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한 후에 최소 2년의 직업 경력을 쌓은 후에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경로도 있다. 7개의 종합대학이 있고, 7개의 대학에 준하는 전문대학(1개는 사립)이 있다. 이 고등교육기관에는 약 195,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그 중 약 24,500명은 사립전문대학과 단과대에 재학하고 있다.

## Ⅱ.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 1. 의무교육

노르웨이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우리나라의 중학교 단계) 단계이다. 「초·중등교육법」제2장(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제1조(초·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단계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 여 노르웨이의 아동은 만 6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되, 학 부모의 요구에 따라 1년 유예할 수 있으며, 10학년을 마칠 때까지 의 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지속된다.

#### 「초・중등교육법」

#### 제 2 장 초·중학교(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제 1 조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Right and obligation to attend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아동과 청소년은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 법과 이 법의 법규명령에 따라 국가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의무 는 국공립 초·중학교나 기타 동일한 교육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아동이 노르웨이에서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거주 시 적용된다. 초·중학교 교육을 받을 의무는 3개월 동안 거 주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정부부처는 특별한 경우 이 의무로부터 학생들 을 면제시킬 수 있다. 아동은 보통 6세가 되는 해부터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만약 전문적인 진단 결과 그 아동이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을 만 큼 성숙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입학 시기를 1년 연기할 수 있다.

전문 진단과 학부모의 서면 동의에 근거 기초 지자체는 특별한 경우 학교 입학 1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학부모의 요구나 동의에 근거, 기초 지자체는 아동이 4월 1일까지 5세가 될 경우 1년 일찍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학교 입학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학생이 10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속된다. 전문 진단 및 학부모의 서면 동의에 근거 기초 지자체는 학생이 원할 경우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학생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면제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학부모의 과실로 인해 학생이 무단결석할 경우, 학부모가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초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

<2003년 1월 31일 법에 의해 개정됨>

#### 2. 무상교육

노르웨이의 무상교육에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교육 및 전기중등교육과 유아교육, 고등학교 교육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제3장(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제1조(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고등학교 교육단계의 무상교육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초·중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3년간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 3 장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제 1 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Right to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ng people)

초·중학교 교육을 마쳤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 학생들은 3 년간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년 이상의 지도기간을 요구하는 과목은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따라 규정된 지도기간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15세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학생과 수습교사들은 이 법과 법규명령에 근거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24세에 이르기 전에 훈련체계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제공될 때 5년이나 6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고등교육법」 제1부(Part I. Joint provisions) 제7장(Miscellaneous Provisions) 제1조(학비)는 국립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은 학생에게 학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립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은 국가가 지원하는 학자금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의 고등교육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고, 사립의 고등교육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다.

#### 「고등교육법」

## 제 1 부 공통 조항(Part I. Joint provisions)

#### 제 7 장 기타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

- 제 1 조 학비(Section 7-1. Fees)
  - ① 국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학위를 위한 일반 수업이나 전문가 훈련 수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부처는 특별한 경우 이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사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국가 지원 학자금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state)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은 재정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부부처는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이 학생들에게 수업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 Ⅲ. 소외계층 지원교육

노르웨이는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계층이라는 이유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대신노르웨이 언어 형식 가운데 특정한 형식을 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청각장애나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주민과 소수민족 학생에게는 해당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게 지원하거나, 노르웨이어에 능숙해질 때까지 노르웨이어 개별화교육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의 주된 노르웨이 언어 형식 선택

노르웨이는 초·중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주된 노르웨이 언어 형식 선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장(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제5조(초·중학교에서 노르웨이어의 형식)는 "7학년까지는 학부모가 교과서 사용에 관한 노르웨이 언어 형식을 결정하고, 8학년부터는 학생들 스스로가 사용할 언어를 직접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7학년 사이의 학생에 대해 기초 지자체가결정하는 언어 형식 외의 언어로 지도받기 원하는 학생이 적어도 10명이면 별도의 학생 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 제 2 장 초·중학교(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제 5 조 초·중학교에서 노르웨이어의 형식(Forms of Norwegian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기초 지자체가 노르웨이어(Bokmal or Nynorsk)를 고려한 법규명령을 규정한다. 노르웨이어의 기본 형식은 쓰기 교육과 쓰기 학습에 사용된다. 8학년부터는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노르웨이어의 기본적인 쓰기 형식을 선택하다.

구두 지도 시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언어 형식을 결정한다. 교직원과 학교임원진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해야한다.

학부모가 7학년까지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 노르웨이 언어 형식을 결정한다. 8학년부터는 학생들 스스로가 사용할 언어를 직접 결정한다. 노르웨이어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노르웨이어로 구성되어야한다.

한 기초 지자체에 1학년에서 7학년 사이의 기초 지자체가 결정하는 언어 형식 외의 언어로 지도받기 원하는 학생이 적어도 10명이 출석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학생 그룹에 속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적어도 6명의 학 생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학생들이 그 기초 지자체 에서 몇 몇 다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부모가 어느 학교가 주된 언어 형식으로 가르칠 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노르웨이어 다른 언어로 수업하는 새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은 계속 기존의 언어로 지도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일반학교에서의 수화지도 및 점자지도 제공

노르웨이는 일반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화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장제6조(초·중학교 수화지도)는 "전문 진단에 근거하여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화로 진행되는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장 제9조(고등학교의 수화지도)는 "수화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전문 진단에 따라 이러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정된 청소년은 수화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거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화 통역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 진단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초·중·고교 교육을 수화로 제공하거나 수화 통역사를 지원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 제 2 장 초・중학교

제 6 조 초·중학교 수화지도(Sign language instruction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전문 진단에 근거하여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화로 진행되는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할당된 교육의 내용 및 수업 시수는 이 법의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초 지자체가 학생의 지역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교육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청각장애 미취학 아동은 그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부처가 추가적 인 법규명령을 규정한다.

기초 지자체가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제3장 제10조(브라유 점자 지도 등)는 "시 각장애 학생들은 Braille 점자를 사용한 교육과 필요한 도구에 대한 권 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고등학생들에게는 전문 진단을 거친 후 등학교에 필요한 비용과 안내에 대한 권리 등도 함께 제공된다.

## 3. 이주민 및 소수민족학생 대상 언어교육

노르웨이는 초·중학교에서 핀란드 이주민 학생에게 핀란드어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장 제7조(핀란드

이주민 학생 대상 핀란드어 수업)는 "Troms와 Finnmark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핀란드 이주민 학생 중 적어도 3명이 요구할경우, 학생들은 핀란드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초·중학교에서 소수민족학생들에게 개별화 언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장 제8조(소수민족학생 대상 개별화 언어교육)는 "모국어가 노르웨이어나 사미어 이외의 언어인 초·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일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노르웨이에 능숙해질 때까지 노르웨이어로 개별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소수민족학생들에게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개별화 언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3장 제12조는 "담당 교직원이 모국어 교육과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교과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 광역 지자체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다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제 3 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 제 1 절 교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 I. 헌법의 특징

「헌법」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장 112개 조문으로 분류된다. 「헌법」의 주요내용은 국가형태·국왕·행정부, 국민·영토·국교·국기, 권리(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주거의자유, 재산권, 환경권) 및 의무(국방의 의무 등), 행정·경제·사회·문화, 국제관계, 의회, 사법부, 사미족6에 대한 특례, 헌법 개정 절차등이다.

「헌법」은 1814년 5월 17일에 제정되었고, 주요 원칙은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인권 보장 등 3가지이다. 입법권은 의회(Storting)에 있고, 행정권은 국왕(실질적으로는 정부)에 있으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기본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에 입헌군주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다. 이들 국가의 국왕은 대부분 명목상이고 의례적인 존재이고, 내각의 수반(수상 또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입헌군주국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의 국왕도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명목적・의례적 지위에 머물고 있다.7)

「헌법」제1조는 국가 형태를 '제한적 세습군주제'라고 규정하였다. 헌법 제36조는 국왕과 의회(2/3의 찬성)의 동의가 있어야만 왕권 또는 통치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왕자나 공주가 왕위나

<sup>6)</sup> 사미족은 북유럽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서 핀란드, 러시아,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의 소수민족이다.

<sup>7)</sup> 김용훈, 노르웨이 헌법과 법체계: 교육복지 관련 법규범을 중심으로, 법제연구원, 2013, p.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p.906.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왕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1812년 나폴레옹의 패배 이후 스웨덴은 덴마크를 침공하였고, 1814년 1월 킬 조약을 통해 승전국 스웨덴은 패전국 노르웨이-덴마크 연합왕국으로부터 노르웨이를 복속시켰다. 그러나 당시 노르웨이 부섭정이었던 덴마크 왕자 Christian Frederik이 킬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였고, '국민에 의한 국왕 선출'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르웨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1814년에 노르웨이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비록 스웨덴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8) 노르웨이의 초대 국왕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노르웨이 입헌군주제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국왕의 권한이 명목상인지 아니면 실질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0)는 행정권이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김용훈(2013:6-7)은 "국왕은 행정권을 상당 정도 향유하고 있고, 외교장관이 존재하지 않고, 국왕의 지위가 세습되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왕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노르웨이의 국왕은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은 "국왕에 대해서 인격의 신성함을 이유로 불신임 또는 기소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5조), 행정권이 국왕에게 있다고 선언하였으며(제3조), 국왕은 국무위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고(제12조), 법원의사전 판결 없이 총리와 다른 장관을 면직할 수 있고(제22조), 외교관계를 주도하고(제25조),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한 의회의 법률안은 해

<sup>8)</sup>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정식 독립한 시기는 1905년 6월 7일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국경일은 헌법이 제정된 1814년 5월 17일이다. 이는 노르웨이가 국민에 의한 국왕 선출과 헌법 제정에 대해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것보다 더 큰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의회에서 국왕에게 다시 송부될 수 없다(제76-78조)"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상의 규정만을 근거로 국왕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수상이 실질적으로 내정을 운영하고 있고, 외교장관이 존재하며 외교장관이 실질적으로 외교에 관한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이 규정한 국왕에 관한 조항들가운데 국왕의 세습 등에 관한 사항들은 국왕에 국한된 규정으로 볼수 있으나, 국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왕을 정부로 파악하는 것이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헌법」제17조는 "국왕은 상업, 관세, 국민생활, 경찰에 관련된 법규명령을 제·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나, 이법규명령은 헌법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규정하였다. 이 경우에 국왕을 정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Ⅱ. 교육복지법제의 헌법적 근거

「헌법」에서 교육 및 교육복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제49조는 "국민은 의회를 통해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입법권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의회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들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헌법」제110c조는 "국가기관은 확실한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 정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인권 보장'은 헌법의 기본 원칙 가 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인권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인정 되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와 같은 헌법상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면, 노르웨이에서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거나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

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그리고 노르웨이 사회에서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성별과 지역, 계층, 경제력, 연령, 사용 언어 등 어떤 요인에 따른 차별도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고, 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교육 및 교육복지의 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법규명령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 제 2 절 교육관련 주요 법령

노르웨이의 고육관련 법령은 법률(Acts)과 법규명령(Regulations) 행정지침(Legal Guidelines)으로 분류된다.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에서 소관하는 교육관련 주요법령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노르웨이의 교육관련 주요 법령

| 법 형식         | 법령의 명칭  | 주요 내용  |
|--------------|---|--|
| 법률<br>(Acts) | 유치원 법<br>(Kindergarten Act)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Research [09.05.2011]  Kindergartens shall provide children under compulsory school age with goo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and activity in close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with the children's homes. |
|              | 직업교육에 관한 법률<br>(Act relating to Tertiary<br>Vocational Education) | [11.04.2011] The title of the Act amended by Act of 29 June 2007 no. 90 (in force as of 1 Aug 2007 pursuant to the Decree of 29  |

| 법 형식                  | 법령의 명칭   | 주요 내용  |
|-----------------------|--|--|
|                       |  | June 2007 no. 758) Cf. previous Acts of 14 June 1985 no. 73 and 28 Jan 2000 no. 9.   |
|                       | 고등교육법<br>(Act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 [05.03.2010]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make provisions for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to a) Provide higher education at a high international level. b) Conduct research and academic and artistic development work at a high international level. c) Disseminate knowledge of the institution's activities and promot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and artistic methods and results in public administration, cultural life and business and industry. |
|                       | 교육법<br>(Education Act)   | Act relating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st amended 15 Sept 2010. [29.03.2007]   |
|                       | 초·중등교육법<br>(Act relating to Primary<br>and Secondary Educa-<br>tion)   | · Last amended 31 May 2011. In force as of 1 August 2011.  |
| 법규명령<br>(Regulations) | 고등교육 적합성 평가<br>관련 규칙<br>(Regulations relating to<br>suitability assessment<br>in higher education<br>[11.04.2011]) |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30 June 2006 pursuant to section 4-10, sixth paragraph, of the Act of 1 April 2005 no. 15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

| 법 형식 | 법령의 명칭   | 주요 내용  |
|------|--|--|
|      |  |  |
|      | 석사학위 취득조건 관<br>련 규칙 (Regulations<br>concerning Requirements<br>for Master's Degrees<br>[11.04.2011])   |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1 December 2005 pursuant to section 3-2, subsection 1, and section 3-7, subsection 2, of the Act of 1 April 2005 no. 15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
|      | 고등 교육 입학 관련<br>규칙<br>(Regulations concern-<br>ing Admission to Higher<br>Education<br>[11.04.2011])  | Legal bas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31 January 2007 based on section 3-6, section 3-7 and section 4-9 of the Act of 1 April 2005 no. 15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cf. decision concerning delegation of 7 October 2005 no. 1107. |
|      | 사미족 초·중학교 교<br>사 교육 프로그램 관<br>련 국가 교과 과정<br>(National Curriculum for<br>Sami Primary and Lo-<br>wer Secondary Teacher<br>Education Programmes<br>[03.03.2010]) |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31 January 2007 based on section 3-6, section 3-7 and section 4-9 of the Act of 1 April 2005 no. 15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cf. decision concerning delegation of 7 October 2005 no. 1107.              |
|      | 구별된 교사교육 관련<br>국가 교과 과정 규칙<br>(National Curriculum<br>Regulations for Differen-<br>tiated Teacher Education<br>[03.03.2010])                                   | National Curriculum Regulations for Differentiated Sami Primary and Lower Secondary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for Years 1 - 7 and Years 5 - 10.  The Regulations apply to the 4-year differentiated primary and lower secondary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The                       |

| 법 형식                  | 법령의 명칭   | 주요 내용  |
|-----------------------|--|--|
|                       |  | Regulations define the National Curriculum for primary and lower secondary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for years 1-7 and years 5-10.  EN_GB Flere   |
| 행정지침                  | 국제 고등교육의 질 (quality)에 대한 설명<br>지침 (Guidelines on<br>"Quality Provision in<br>Cross-Border Higher E-<br>ducation"<br>[11.04.2011] | The initiative to develop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is a follow-up to 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29 September17 October 2003), inviting the DirectorGeneral to "develop practices and principles to guide cross-border provision of higher education, drawing on the competence of UNESCO and other international agencies, in cooperation with quality assurance agencies and educational providers". |
| (Legal<br>Guidelines) | 구별된 교사교육 관련<br>국가 설명지침<br>(National Guidelines for<br>Differentiated Teacher<br>Education Programmes<br>[20.01.2010])            | The National Guidelines are based on the National Curriculum Regulations for Differentiated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for Years 1 - 7 and Years 5 - 10. The Regulations provide the overarching policy for the differentiated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designed for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
|                       | 구별된 사미족 초·중<br>학교 교사 교육 프로<br>그램 관련 설명지침<br>(Guidelines for the Dif-   | The Guidelines supplement the Regulations and are to provide the policy for the institutions' programme descriptions.  |

| 법 형식 | 법령의 명칭  | 주요 내용 |
|------|---|-------|
|      | ferentiated Sami Primary<br>and Lower Secondary<br>Teacher Education Prog-<br>rammes<br>[19.01.2010]) |       |

자료: 노르웨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홈페이지, Acts and Regulations, Retrieved March 28, 2013, (검색일: 2013.6.30.) <a href="http://www.regjeringen.no/en/dep/kd/documents/legislation.html?id=313564">http://www.regjeringen.no/en/dep/kd/documents/legislation.html?id=313564</a>.

#### 제 3 절 초 · 중등교육법

## I. 체계

노르웨이의 「초·중등교육법」(「Act of 17 July 1998 no. 61 relating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1998년 제정, 2011년 개정)은 총 18장 142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 및 조항의 제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 제 1 장 목적·범위·개별화교육(Objectives, scope and adapted education, etc.): 5개 조항
  - 제 1 조 교육의 목적
  - 제 2 조 적용 범위
  - 제 3 조 개별화교육
  - 제 4 조 시범 운영
  - 제 5 조 법규명령
- 제 2 장 초·중학교(Th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16개 조항
  - 제 1 조 초 ·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
  - 제 2 조 초 · 중학교의 학사일정 체제
  - 제 3 조 초 · 중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제3a조 수업 활동으로부터의 예외

제 4 조 종교, 철학 및 도덕 지도

제 5 조 초 · 중학교에서 노르웨이어의 형식

제 6 조 초 · 중학교 수화지도

제 7조 핀란드 이주민 학생 대상 핀란드어 수업

제 8 조 소수민족학생 대상 개별화 언어교육

제 9 조 학교규칙 등

제10조 퇴학 조치

제11조 의무 교육에서의 휴학

제12조 사립 초 · 중학교

제13조 홈 스쿨에 대한 이 법의 적용

제14조 브라유 점자 지도 등

제15조 초 · 중학교 공교육 무상에 대한 권리

제 3 장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12개 조항

제 1 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

제 2 조 고등학교 수업시수

제 3 조 고등학교 수학연한

제 4 조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

제 5 조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교원에 대한 평가

제 6 조 보충 교육

제 7 조 학교규칙 등

제 8 조 퇴학조치 및 권리 상실

제 9 조 고등학교의 수화지도

제10조 브라유 점자 지도 등

제11조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국제적 동의

제12조 소수민족을 위한 언어교육

제 4 장 민간에서의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enterprises): 8개 조항 (생략)

제4a장 성인교육 및 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sed especially for adults): 12개 조항
 (생략)

- 제 5 장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 9개 조항 (생략)
- 제 6 장 사미족 교육(Sami education): 4개 조항 (생략)
- 제 7 장 교통지원 및 기숙사(Transport and accommodation): 6개 조항
  - 제1조 초 · 중학교의 교통지원 및 기숙사
  - 제 2 조 고등학교의 교통지원 및 기숙사
  - 제 3 조 장애아 및 환자 학생의 교통지원
  - 제 4 조 보호 및 장학
  - 제 5 조 < 2000년 6월 30일 제정된 법률에 의해 폐지됨>
  - 제 6 조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통지원
- 제 8 장 교육조직 (Organization of the teaching): 4개 조항 (생략)
- 제 9 장 학교의 관리·기능·시설·수업교재(School management, functions, equipment and educational resources): 6개 조항
  - 제1조 관리
  - 제 2 조 상담 및 학교도서관 편의시설
  - 제 3 조 시설
  - 제 4 조 교과서 및 교육 지원
  - 제 5 조 학교부지
  - 제 6 조 학교 내 광고 관련
- 제9a장 학교환경(The pupils' school environment): 9개 조항 (생략)
- 제10장 교직원 (The school staff): 10개 조항 (생략)
- 제11장 학교참여기구(School bodies for user participation): 11개 조항 (생략)

- 제12장 훈련체제 내 직업훈련 관련부서(Bodies associated with vocational training in training establishments): 7개 조항 (생략)
- 제13장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국가의 책임(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ity, the county authority and the State): 13개 조항

제 1 조 초 · 중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의무

제 2 조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관에서의 초·중학교, 특수교육지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

제 3 조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

제3a조 병원에서의 초·중학교, 특수교육지원, 고등학교 교육훈련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

제3b조 사고보험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

제 4 조 통학수단 제공의 책임

제 5 조 과일 및 채소급식 무상제공에 대한 학교운영자의 의무

제 6 조 음악 및 기타 문화 활동 관련 교과(목)의 제공

제 7 조 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

제7a조 숙제지원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의무

제 8 조 오슬로 지자체

제 9 조 국가의 지원

제10조 책임의 범위

- 제14장 장학 및 감독(Supervision and control): 2개 조항 (생략)
- 제15장 공공행정법의 적용. 정보제공의 의무(Applic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ct. Duty to provide information): 4개 조항 (생략)
- 제16장 경과규정의 법적 효력 및 개정안(Entry into force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mendments to other Acts): 4개 조항 (생략)

#### Ⅱ. 주요내용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복지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초・중학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노르웨이는 초·중학교의 10년 동안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 기간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무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 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제2장 초·중학교 제1조(초·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는 "아동과 청소년은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와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만 6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되,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1년 유예할 수 있으며, 10학년을 마칠 때까지권리와 의무가 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동법 제2장 제15조(초·중학교 공교육 무상에 대한 권리)는 "학생들은 공립학교의 초·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는 초·중학교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비와 학교 정규시간 동안의 교통비, 학교 체험활동, 수학여행이나 초·중학교 교육의 일부인 외부 활동 등"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 2 장 초・중학교

제15조 초・중학교 공교육 무상에 대한 권리

#### (Right to free public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학생들은 공립학교의 초등교육 및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기초 지자체는 초·중학교 교육에 관련된 비용, 예를 들면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비, 학교 정규시간 동안의 교통비, 학교 체험활동비, 수학여행이나 초·중학교 교육의 일부인 외부활동 비용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다.

#### 2. 고등학교 무상교육

노르웨이의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단계는 아니나,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3장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제1조(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초·중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3년간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3년 이상의 교육 기간이 요구되는 과목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육기간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강제교육은 아니지만, 고등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3년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의 범위는 초·중학교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07년부터 무료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가 교과서 등 수업교재비를 부담한다.

<sup>9)</sup> 박옥경, 노르웨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교과서연구』 통권 54호, 한국교과서연구 재단, 2008.8, pp.54-55.

#### 3. 국가·지자체의 권한과 학생·학부모의 권리

노르웨이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 교육정책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도함께 존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루터복음교를 국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학교교육에서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초기교육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읽기 교육은 주로 루터복음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국교의 인정과 학교 종교교육 간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있다.10)

「초·중등교육법」제2장 제3a조(수업 활동의 예외)는 "모든 학생들은 국교의 종교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종교교육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 종교수업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장 제11조(의무교육에서의 휴학)는 "학생이 신청할 경우에 기초 지자체는 각 학생에게 2주까지 휴학을 허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르웨이 교회 밖의 종교적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신청할 경우에 그들의 종교집단에서 경건하게 기념하는 날에 결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 권리에는 학생이 복학한 후에 기존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휴학기간동안의 학비에 해당함)을 학부모가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초·중학교에서 사립의 비율은 학교수 기준으로 약 4.7%이고 학생수 기준으로 2.2%이다. 고등학교에서 사립의 비율은 학교수 기준으로 약 16%이고 학생수 기준으로 6%이다.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사립의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sup>10)</sup> 김용훈, 앞의 글, p.15.

종교교육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크지 않다.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국교의 인정과 학교 종교교육 간의 합리적인 관 계를 설정하기 위한 법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4. 학생의 통학과 숙소, 등·하교 안전 및 보호

노르웨이는 학생의 통학과 숙소, 등교 후 및 하교 시의 안전 및 보호 등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복지를 경제적비용 지원의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학생의 통학과 거주, 안전과 보호, 상담 및 도서관 이용, 다양한 측면의 교육환경 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중등교육법」제7장 교통지원 및 기숙사(Transport and accommodation) 제1조(초·중학교의 교통지원 및 기숙사)는 "학교로부터 4km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1학년~10학년 학생들은 무상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통학하는 지역이 특히 위험한 지역인 학생들은 거리에 무관하게 무상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필요시, 학생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무상 선박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통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기초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고, 학생의 나이, 장애, 통학 시 소요시간, 안전, 그리고 일일 통학을 위해 교통수단 이용 시 과대 비용이나 어려움을 겪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항들을 고려한 후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가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감독한다"고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 제 7 장 교통지원 및 기숙사(Transport and accommodation)

제 1 조 초·중학교의 교통지원 및 기숙사(Transport and accommodation in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1)

학교로부터 4km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는 1학년~10학년 학생들은 무상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통학하는 지역이 특히 위험한 지역인 학생들은 거리에 무관하게 무상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필요시, 학생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무상 선박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일일 교통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기초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기숙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기숙사 시설 이용 기준은 나이, 장애, 통학 시 소요시간, 안전, 그리고 일일 통학을 위해 교통수단 이용 시 과대 비용이나 어려움을 겪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경우, 부모들이 학생이 교통이나 기숙시설을 제공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가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감독한다.

<2002년 12월 법에 의해 개정됨>

동법 제7장 제4조(보호 및 장학)는 "학생들은 통학 시 필요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기다리는 시간과 하루 일과가 끝나고 하교할 때에 필요한 장학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 제 7 장 교통지원 및 기숙사

제 4 조 보호 및 장학(Escort and supervision)

학생들은 통학 시 필요한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또한 매일 수업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동안 필요한 장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필 요한 보호 및 장학은 또한 제7조 제3항 세 번째 문장에 근거한 학교 아동 대상 보육 시설과 학교 간 통학거리에 필요한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 지는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2010년 6월 2일 법에 의해 개정됨>

제9장 학교의 관리·기능·시설·수업교재(School management, functions, equipment and educational resources) 제2조(상담 및 학교도서관 편의시

설)는 학생들의 상담에 관한 권리와 도서관 이용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9a장 학교환경(The pupils' school environment)은 일반 요구사항(제1조)과 물리적 환경(제2조), 심리·사회적 환경(제3조), 보건, 환경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체계적 노력(제4조),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참여(제5조), 방과후 보육시설(Day-care facilities for school children, 제8조)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제9장 제2조는 학생들의 교육 및 직업·사회문제에 관한 상담 받을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였고, 제9a장 제5조는학교 보건, 한경, 안전에 대한 학생 참여 권리와 방법, 기구 등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 제 9 장 학교의 관리 기능・시설・수업교재(School management, functions, equipment and educational resources)

제 2 조 상담 및 학교도서관 편의시설(Counselling and school library facilities) 학생들은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관련해서 필요한 상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이와 관련추가 법규명령을 정할 수 있다.

#### 제9a장 학교환경(The pupils' school environment)

제 5 조 학교환경 참여 교육 (Pupil participation in school environment work) 학생들은 학교 보건, 환경, 그리고 안전에 대한 계획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 각 학년에 맞는 학습을 적용해야 한다.

학생위원회는 학교 관련 학생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환경 대표 와 학교 환경 관련 문제 공공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학교 환경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 환경 그리고 안전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학교 환경 관련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은 최대 2명이 환경 위원회나「학습환경법」의 제7장에 근거한 학교가 세운 협력위원회의 대표로 임명될

수 있다. 학교 환경 대표들은 그들의 관점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다. 학교 환경 대표들은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의무 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참여할 수 없다.

학교 환경 대표들은 그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결석이 허용되며 필요한 훈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002년 12월 법에 의해 추가됨>

#### 5. 교육복지에 관한 광역 · 기초 지자체 및 국가의 의무

노르웨이는 교육복지에 관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와 그것을 관리· 감독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교정시설 내 의 고등학교 교육 제공, 병원 내에서의 초·중학교 교육 제공, 학생 대상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 통학수단 제공, 음악 및 기타 문화 활동 관련 교과(목), 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1학년~4학년 학생 대상 숙제지원 등이 포함된다.

#### 「초・중등교육법」

## 제13장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국가의 책무(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ity, the county authority and the State)

제 3 조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Duty of the county authority's obligation to provide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광역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고등학교 모든 거주민들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에 부합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제3조 제1항이나 제4의1조 제3항에 근거한 권리를 제외한 지원자 대상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누가 광역 지자체의 거주민으로 고려되는지에 관련한 개인적인 사례에 법규명령이나 안내를 규정한다. 정부부처는 거주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구 고등학교 교육 관련 발생하는 비용을 환불하는 것까지책임지도록 하는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정부부처는 광역 지자체가다른 지역구 지원자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부부처는 특별한 경우 교정시설 내의 기타 교육 관련 광역 지자체에 게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국가 목표, 지원자의 희망 그리고 사회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필요, 다양한 연령 집단 대상 모든 분야의 학업, 교정시설의 교육, 복지, 그리고 의학 기관 및 특수교육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 고등학교 교육 시설에 대한 계획 및 개발을 해야 한다.

공립 고등학교는 광역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국 가나 기초 지자체가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초 지 자체는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2000년 6월 30일 법에 의해 개정됨>

제3a조 병원에서의 초·중학교, 특수교육지원, 고등학교 교육훈련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 (The county authority's obligation to provid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special educational assistance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in health institutions)

교육기관이 위치한 지역구의 정부부처는 지역 보건 기업과 협약을 맺은 사립 보건 기관의 환자와 지역 보건 기업이 운영하는 보건 기관에 거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 법에 근거하여 초·중학교 교육, 특수 교육 지 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에 부합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의 의무는 지역 기업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기관의 환자들에게만 적용된 다. 정부부처가 광역 지자체의 의무 관련 개인 사례에 추가 법규명령이 나 안내를 규정할 수 있다.

<2002년 4월 법에 의해 추가됨>

제3b조 사고보험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The municipality's and the county authority's obligation to provide accident insurance)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생 대항 사건 보험을 제공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정부부처가 사고 보험 관련 추가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2007년 6월 29일 법에 의해 추가됨>

「초·중등교육법」제13장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및 국가의 책무 (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ity, the county authority and the State)

제3조(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는 광역 지자체의 지역주민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 제공 책무(특별한 경우에 국가나 기초 지자체 운영 가능)와 그것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국가의지도·감독, 광역 지자체의 교정시설 내의 고등학교 교육 제공 책무등을 규정하였다. 제3조a(병원에서의 초·중학교 및 특수교육, 고등학교 교육·훈련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는 병원 내에서의 초·중학교 교육(한국의 병원 학교에 해당함)을 광역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b(사고보험에 대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의무)는학생 대상 사고에 대한 보험 제공을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같은 장 제4조(통학수단 제공의 책임)는 유·초·중·고교 학생 및 성인의 통학길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는 교통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을 위한 보호 및 관리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통학지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 제13장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국가의 책무

제 4 조 통학수단 제공의 책임(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chool transport, etc.) 기초 지자체는 특별히 통학길이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 지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초·중학교 학생 및 성인 대상 교통 지원에 대한 의무가 있다. 기초 지자체는 제7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생들의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다. 기초 지자체는 유치원생, 초·중학생및 성인 대상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 지자체가 제7장에 근거한 조항에 따라 교통지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의 교통지원을 받는 초·중학교 학생 및 성인에게 일반 이용 승객 대상 현(current) 교통비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보상한다.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교통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만약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교 교통지원 체계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부처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정부부처가 이 법과 학교 교통지원, 교통비 지원 및 다른 지역구의 고등학교 교육 관련 교통지원 비용을 환불하기 위한 거주지 지역구의 의무관련 법규명령에 따라 기숙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 대상통학 길 보호 및 기숙시설 관련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같은 장 제6조(음악 및 기타 문화 활동 관련 교과(목)의 제공)는 "모든 기초 지자체는 다른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학교 체제 및 지역 문화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및 문화활동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7조(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는 "기초 지자체는 1학년~7학년에 재학 중인 특별지도가 필요한 아동과 1학년~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전이나 방과 후에 보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 제13장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국가의 책무

제 6 조 음악 및 기타 문화 활동 관련 교과(목)의 제공(Provision of courses in music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모든 기초 지자체는 다른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학교 체계 및 지역 문화생활에 관련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음악 및 문화 활동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경찰 신원조회 관련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10조 제9항의 법규명령에 적용된다.

<2000년 6월 25일 법에 의해 개정됨>

제 7조 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Day-care facilities for school children)

기초 지자체는 1학년~7학년에 재학 중인 특별지도가 필요한 아동과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전이나 방과 후에 학교 아동에게 보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은 아동의 나이, 기능적 수준 및 관심에 적합한 놀이 및 문화 레저 활동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아동들은 발달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실내외 공간이 목적에 맞아야 한다.

학교 아동 대상 보육 시설은 법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1. 소유권
- 2. 아동 수용 담당자
- 3. 입학 허가 기준
- 4. 입학 허가 여부 공고 기간 및 허가 종료 공고 시간제한
- 5. 학부모 비용
- 6. 학생 당 지정된 놀이 활동 구역
- 7. 일일 개원 시간 및 연중 개원일 및 마감일
- 8. 직원채용 및 관리

보육시설이 학교와 관계되어 있을 때, 보통 교장이 대표를 맡는다. 정부 부처는 이 요구사항에서 예외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는 학부모에게 학교 아동 대상 보육시설 관련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신원조회 관련 요건에 대해서는 제10조 제9항의 법규명령이 적용 된다.

기초 지자체는 이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학교 아동 대상 보육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다른 담당자를 이 용할 수 있다.

정부부처가 학교 아동 대상 보육 시설 관련 추가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2003년 6월 27일 법에 의해 개정됨>

같은 장 제7조a(숙제지원에 대한 지자체 의무)는 "기초 지자체가 1학년~4학년 학생을 대상 숙제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이 지원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학생들은 숙제지원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신청여부는 의무가 아닌 자유이다. 이 조항은 2010년 6월 25일에 신설되었고, 광역 지자체는 숙제지원 조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 제13장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국가의 책무

제7a조 숙제지원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의무(The municipality's obligation to provide homework help)

기초 지자체가 1학년~4학년 학생 대상 숙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원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숙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신청여부는 자유다.

경찰 자격 관련 요건은 제10조 제9항의 법규명령에 적용된다.

정부부처가 숙제지원 관련 조항에 대한 추가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2010년 6월 25일 법에 의해 추가됨>

### Ⅲ. 평 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국가에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 교육 복지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육에서 복 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은 10년 동안의 의무교육 기간은 물론이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하였다. 이는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 지 않도록 하려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성별과 지역, 계층, 경제력, 연령, 사용 언어 등 어떤 요인에 따른 차별도 용인되지 않는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무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만약,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정하는 법규명령으로 규정하거나, 법령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의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무상의 범위와 대상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복지에 관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와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학생의 안전 및 보호 등에 관 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가에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의 무를 부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 4 절 고등교육법

### I. 체 계

노르웨이의 「고등교육법」(「Act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2005년 제정)은 총 4부 13장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와 장 및 조항의 제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 제 1 부 공통 조항 (Part I. Joint provisions)

- 제 1 장 법의 목적 및 범위 (Purpose and Scope of the Act): 6개 조항
  - 제 1 조 법의 목적 및 범위
  - 제 2 조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법'의 범위
  - 제 3 조 교육기관의 활동
  - 제 4 조 사립교육기관의 특별 의무
  - 제 5 조 학문 및 예술의 자유
  - 제 6조 교육의 질 보장
- 제 2 장 노르웨이 교육의 질 증진을 위한 기구(The Norwegian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NOKUT): 2개 조항 (생략)
- 제 3 장 학업에 대한 결정 승인(Academic Decisions Accreditation): 11개조항
   (생략)
- 제 4 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The Students' Rights and Obligations): 11개 조항
  - 제1조 전교생
  - 제2조 학습 계약
  - 제 3 조 학습 환경
  - 제 4 조 교육기관의 학생 대표
  - 제 5 조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
  - 제 6 조 비밀유지에 대한 학생의 의무
  - 제 7 조 시험 취소
  - 제 8 조 퇴 학
  - 제 9 조 범죄로 인한 퇴학
  - 제10조 적성평가에 따른 퇴학
  - 제11조 법정의 퇴학조치 재심
- 제 5 장 이의제기(Appeals): 3개 조항 (생략)

- 제 6 장 임명(Appointment): 7개 조항 (생략)
- 제 7 장 기타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 6개 조항
  - 제1조학비
  - 제 2 조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의 명칭 보호
  - 제 3 조 국가공인 번역사자격증
  - 제 4 조 과학 소장품 담당자
  - 제 5 조 연감의 기본 자료
  - 제 6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2 부 사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Part II. Private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제 8 장 사립학교에 대한 기타 조항: 3개 조항 (생략)

## 제 3 부 국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Part III. State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 제 9 장 위원회(The Board): 8개 조항 (생략)
- 제10장 총장(Rector. Director): 5개 조항 (생략)
- 제11장 임명(Appointment): 3개 조항 (생략)
- 제12장 다양한 조항(Various Provisions): 4개 조항 (생략)

#### 제 4 부 기타 조항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제13장 마지막 조항들 (Final Provisions): 4개 조항 (생략)

### Ⅱ. 주요내용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복지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립 및 사립대학의 학비 무상지원 및 감면

노르웨이의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무상으로 운 영되고 있다. 그리고 사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제1부 공통 조항(Part I. Joint provisions) 제7장 기타 (Miscellaneous Provisions) 제1조(학비) 제1항은 "국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학위를 위한 일반 수업이나 전문가 훈련 수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정부부처는 특별한 경우 이 조항의 예외 규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같은조 제2항은 "사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국가 지원 학자금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국가(state) 지원을받는 교육기관은 재정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같은조 제3항은 "정부부처는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이 학생들에게 수업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의 고등교육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사립의 고등교육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상교육이 규정 또는 보장된 것은 아니다.

#### 2.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대책

노르웨이는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복지 발전을 매우 강조하였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학습 환경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물리적 및 정신적 학습환경 조성에 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먼저, 고등교육기관에 '학습 환경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위원회는 학습 환경 및 학생의 안전과 복지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관한 요구를 수렴해야 하며, 학생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고등교육법」제1부 제4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The Students' Rights and Obligations) 제3조(학습 환경) 제3항은 "교육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할 '학습 환경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환경 위원회는 학습 환경 및 학생의 안전과 복지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학습 환경 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에 대한 불만을인지해야 하고, 학습 환경 위원회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을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습 환경 위원회는 학생의 학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 위원회는 학생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좋은 학습 환 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고등교육법」(「Act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 제 1 부 공통 조항(Part I. Joint provisions)

제 4 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The Students' Rights and Obligations)

#### 제 3 조 학습 환경(Section 4-3. Learning Environment)

- ① 위원회(the board)는 학생의 학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를 가진다. 학생 복지 기관과의 협력 하에 위원회는 좋은 학습 환경에 맞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물리적 및 정신적 학습 환경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학생의 보건, 안전, 그리고 복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물리적 학습 환경은 다음 사항들이 학생 활동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되어야 한다.
- 부지, 접근 경로, 계단
- 조명, 실내 소음 및 공기
- 부지의 청결함
- 상해 및 사고 방지
- 안전한 장비
- 장애학생들을 위한 부지, 접근 경로, 위생시설, 기술 장비 등
- 양성 평등한 학습 환경
-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학습 환경 등

#### 2005년 4월 1일

- ③ 교육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할 학습 환경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환경 위원회는 학습 환경 및 학생의 안전과 복지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the board)는 또한 환경 위원회(the committee)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학습 환경 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에 대한 불만을 인지해야 한다. 학습 환경 위원회는 그와 같은 문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르웨이 노동 조사기관(the Norwegian Labour Inspection Authority)이 규정한 각각의 법규명령 및 지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 학습 환경 위원회는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학습 환경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과 교육기관은 위원회에 각각의 대표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기관과 학생 대표 중에서 매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 ④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 업무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제1조-제6조에 따른 질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의 내부 체계의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교육기관은 가능한 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개별 수업의 학업 자격 요건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노르웨이 노동 검사 기관(The Norwegian Labour Inspection Authority) 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한다. 감독 및 강제적 조치 관련 업무 환경법의 제7장의 조항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이 조항에 부합하도록 감독 및 강제적 조치 관련 보조 조항을 포함하는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같은부 같은장 같은조 제1항은 "학습 환경 위원회는 학생의 학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학습 환경 위원회는 학생 복지 기관과의 협력하여 좋은 학습 환경에 맞는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학습 환경 위원회는 물리적 및 정신적 학습 환경을 포함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의 보건, 안전, 복지를 충족시키도록 하였 다. 특히, 물리적 학습 환경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고등교육법」제1부 제4장 제3조 제2항은 "학습 환경 위원회는 물리적 및 정신적 학습 환경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학생의 보건, 안전, 그리고 복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학습 환경을 학생 활동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1. 부지, 접근 경로, 계단, 2. 조명, 실내소음 및 공기, 3. 부지의 청결함, 4. 상해 및 사고 방지, 5. 안전한 장비, 6. 장애학생들을 위한 부지, 접근, 7. 경로, 위생시설, 기술 장비등, 8. 양성 평등한 학습 환경, 9.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학습 환경 등" 등이 포함된다.

3. 재학 중인 학생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교육지원 제공

노르웨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학생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휴학 및 복학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등교육기관 은 학생이 휴학 후 가능한 조기에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법」제1부 제4장 제5조(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 제1항은 "학업 중 출산하는 학생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학생은 휴학 전 학년에 맞는 적절한 학년으로 복학할 권리를 가져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항은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휴학 후 가능한 한 빨리 복학하여학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고등교육법」

#### 제 1 부 공통 조항

제 4 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 5 조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Section 4-5. Right to Parental Leave)

- ① 학업 중 출산하는 학생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학생은 휴학 전 학년에 맞는 적절한 학년으로 복학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노동환경법(the Working Environment Act)의 제31조와 제32조가 적용된다.
- ②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휴학 후 가능한 한 빨리 복학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Ⅲ. 평 가

「고등교육법」은 교육에서 인권과 평등, 교육복지를 중시하도록 한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비해 덜 명시적인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국립대학에서 사실상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에서 학비를 감면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초 ·중·고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고등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특성을 고려 하되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평가되며, 평등을 중시하는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둘째,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에 '학습 환경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복지 발전을 매우 강조한 조치로 평가되며, 인권과 교육복지를 중시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고등교육법」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교육지원 제공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 제 4 장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르웨이는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많이 다르다. 같은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핀란드와도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도 많다. 한국과도 여러 가지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고할 만한 점이 있으므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학교교육의 개혁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마련 및 추진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제 1 절 중학교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입법화

노르웨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를 의무교육단계로 규정하고 모든 교육 관련 경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고등학교 단계에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평등주의를 기본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고등학교는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초·중학교와는 달리 기본적인 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하되학생·학부모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중학교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에 관한 입장이 모호하다. 법령 및 교육과정 고시를 살펴보면 평등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국제중학교를 비롯한 특성화중학교가 「초·중등교

육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등 학교제도는 다양성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 교육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학교제도를 정비하여 법령과 제도의일치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제 2 절 무상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초·중등교육법」은 초·중학교의 공교육 무상에 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특히 법률 수준에서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비와 학교 정규시간 동안의 교통비, 학교 체험활동, 수학여행이나 초·중학교 교육의 일부인 외부 활동 등을 구체적인 무상제공 항목의 예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대해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초·중학교의 교과서대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그리고 만 3-5세 유아교육의 무상제공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나, 유아교육 무상제공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업료·입학금 외의 사항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무상제공 범위와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제공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 3 절 다양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

노르웨이는 초·중등 교육정책에 관한 국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학교 설립·운영자, 학생·학부모의 책무와 권한, 권리·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를 교육복지 법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헌법을 통해 국교로 규정한 종교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시에 그 종교교육을 불편해하는 학생을 위해 출석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가와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교사, 학생·학부모등의 책무와 권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10여 건이 넘고, 교육장의 고유한 업무를 규정한 법령은 미비하며, 학교와 학교장의 권한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 및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령 또는 조례가 미비하다. 종교교육과 같이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체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제를 마련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할필요가 있다.

## 제 4 절 교육복지의 목표 및 우선순위 재검토

노르웨이는 교육복지를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만 국한하여 접근하지 않고, 학생의 통학과 거주, 안전과 보호, 상담과 교육환경 보호 등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의 모든활동 속에 교육복지의 지향과 목표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교육복지에 관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의무와 국가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도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복지에 관한 개념 및 지향하는 목표가 아직 모호하다. 그런 가운데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급식비, 수업준비물대금, 통학비, 기숙사비 등을 전체 또는 일부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교육복지 정책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이나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족 학생, 학업부적응 학생,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등은 교사 및 동료학생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나 시·도 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안전과 보호, 상담, 의견을 중시하고 그것을 예산과 인력, 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의 태도, 학생・학부모의 권리규정, 지자체의 책무 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및 수행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 법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의 목표와추진방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적게들면서도 학생・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 5 절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노르웨이는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의 학비를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립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일정부분 감면하고 있다.

법적으로 무상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학비를 적 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 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르웨이 사회는 '평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헌법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선언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경감'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의 목표가 '고른 교육기회 보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교 무상교육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장애·다문화 ·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들 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과제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고른 교육기회 보장'에 부합한 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 졸업 후 취업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학 교육비 부담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9만9,664불로 세계3위에 해당하고, 자원부국인 노르웨이가 고등교육 학비를 무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등 막대한 교육재정소요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6 절 고등교육단계의 학습 환경 및 학생 복지·안전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

「고등교육법」은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복지 발전에 대한 권리와 고등교육기관의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율하였다. 고등교 육기관에 '학습 환경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물리적 및 정신적 학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고등교육기관에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그 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관한 요구를 수렴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의 대학은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학생복지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행사에 참석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실험실 등에서 강의 또는 연구 중에 사고를 당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이 강의 전후에 공부하거나설 수 있는 시설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상급식 논쟁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가정형평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 기숙사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학생복지안전관'을 설치하여 학생복지와 학교폭력, 학생건강, 방과후학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러나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환경·안전·복지 관련 부서는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교육기본법」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항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고등교육법」에는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에 학생의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헌장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에 고등교육단계의 학습 환경 및 학생복지·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고등교육기관에도 해당 조직 및 인력을 설 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 법」에도 학습 환경 및 학생복지·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와 대학 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5장결론

지금까지 노르웨이의 교육제도 및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교육복지법 제의 체계 및 내용을 검토 및 평가하였다. 그리고 노르웨이 교육복지 법제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한국의 교육복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르웨이의 교육제도 및 복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제도는 고유한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된 복지제도를 교육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학교교육제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유아교육 단계'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중학교 단계'(초등교육+전기중등교육),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성격의 '고등학교 단계'(후기중등교육), '고등교육 단계' 등 4가지 교육단계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제도 및 평생교육제도에는 평등과 인권,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의 이념이 충실하게 내재되어 있다.

둘째, 노르웨이의 교육법제는 「헌법」을 근간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헌법」에서 교육 및 교육복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노르웨이에서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거나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며, 노르웨이 사회에서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할수 있다.

셋째, 노르웨이의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법제는 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할 적극적인 조취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고교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으로 규

율하고,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 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넷째, 「초·중등교육법」은 총 18장 142조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은 총 4권 13장 7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법률은 인권과 평등, 교육복지를 중시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노르웨이는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많이 다르고, 한국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중학교교육단계에 적합한 평등성과 다양성에 대한 합의 도출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 ②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법제화필요성, ③국가와 지자체, 학교장, 교사, 학생·학부모 등의 권리·의무·책임에 관한 법적 명확성 추구, ④교육복지 법제의 정비와 그에따른 교육복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 재정비 필요성, ⑤유·초·중·고교 및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시 '고른 교육기회 보장'에 부합하는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 ⑥교육부에 고등교육단계의 학생복지·안전 담당 부서 설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 2010.8.
- 김용훈, 노르웨이 헌법과 법체계: 교육복지 관련 법규범을 중심으로, 법제연구원, 2013.
- 박옥경, 노르웨이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교과서연구』 통권 54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8.8.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 외교부, 노르웨이 개황, 2012.8.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FEDUCATION IN NORWAY 2007.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Acts and Regulations* (최종 검색일:March 28, 2013), <a href="http://www.regjeringen.no/en/dep/kd/documents/legislation.html?id=313564">http://www.regjeringen.no/en/dep/kd/documents/legislation.html?id=313564</a>.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Act relating to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최종 검색일:March 28, 2013), <a href="http://www.regjeringen.no/upload/KD/Vedlegg/UH/UHloven\_engelsk.pdf">http://www.regjeringen.no/upload/KD/Vedlegg/UH/UHloven\_engelsk.pdf</a>>.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Education Act」(최종 검색일:March 28, 2013),
  - <a href="http://www.regjeringen.no/upload/KD/Vedlegg/Grunnskole/dokumenter/EducationAct\_with\_amendments\_entered2013.pdf">http://www.regjeringen.no/upload/KD/Vedlegg/Grunnskole/dokumenter/EducationAct\_with\_amendments\_entered2013.pdf</a>.
- Stortinget, 「The Constitution」(최종 검색일:March 28, 2013), <a href="http://www.stortinget.no/en/In-English/About-the-Storting/The-Constitution/">http://www.stortinget.no/en/In-English/About-the-Storting/The-Constitution/</a>>.

## [부 록]

부록1.「초·중등교육법」

부록2.「고등교육법」

부록1. 「초·중등교육법」[1998년 제정, 2011년 개정]

| 장 및 조의 제명                                       |   | 규율 내용  |
|---|---|--|
| 제1장 목적 ·<br>범위 · 개별화<br>교육 등                    | 제1조 교육의 목적<br>(The objectives of edu-<br>cation and training) |  |
| (Objectives, scope and adapted education, etc.) | 제2조 적용 범위 (The scope of the Act)                              | 이 법은 초·중·고 공립학교 및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독립형 사립학교법 근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 초·중학교와 초·중등 사교육비를 규정한다. 제4-1조는 기초지자체나 광역 지자체 관할 성인교육에 적용한다. 정부부처가 광역지자체에 노르웨이 학교 졸업증을얻기 위한 해외 고등학교 교육 관할권을 부여한다. 정부부처는 경우에 따라 이 법의 예외를 규정할 수있고 기존의 법안을 변경하거나 기존 처리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 제3조 개별화교육<br>(Adapted education)                              |  |
|   | 제4조 시범 운영<br>(Experimental activities)                        |  |
|   | 제5조 법규명령<br>(Regulations)                                     | 자문 국왕(The King in Council)이 교<br>육 관련 전체적인 목표와 원리를 지<br>원하는 법규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
| (The primary and                                | 제1조 초·중학교 의<br>무교육에 대한 권리<br>(Right and obligation to         | 아동과 청소년은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 법과 이법의 법규명령에 따라 국가 초·중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school) | attend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 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 의무는 국공립 초・중학교나 기타 동일한 교육을 통해 충족될 수있다.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아동이 노르웨이에서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거주 시 적용된다. 초・중학교 교육을 받을 의무는 3개월 동안 거주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정부부처는 특별한 경우이 의무로부터 학생들을 면제시킬 수 있다. 아동은 보통 6세가 되는 해부터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만약 전문 진단결과 그 아동이 학교에서 수학할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을 경우,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입학 시기를 1년 연기할 수 있다. 전문 진단과 학부모의 서면 동의에근거 기초 지자체는 특별한 경우 학교 입학 1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학부모의 요구나 동의에 근거, 기초 지자체는 아동이 4월 1일까지 5세가 될 경우 1년 일찍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학교 입학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학생이 10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속된다. 전문적인 진단 및 학부모의서면 동의에 근거 기초 지자체는학생이 원할 경우 전체적으로나부 단생이 원할 경우 전체적으로부터면제시킬 것을 결정할수 있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The primary and | (Right and obligation to attend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제2조 초·중학교의 학사일정 체제 (Time frameworks for | 기초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으면,   |
|                  | 예외   | 모든 학생들은 국교의 종교교육을<br>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br>종교교육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br>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서면으로 통<br>지할 경우에 종교수업 출석을 면제<br>받을 수 있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The primary and | (Instruction in the subject<br>Religion, Philosophies of<br>life and Ethics)                       | 기호 기기키기 및 레시시(P.11   |
|                  | 제5조 초·중학교에<br>서 노르웨이어의 형식<br>(Forms of Norwegian in<br>primary and lower secon-<br>dary education) | 기초 지자체가 노르웨이어(Bokmal or Nynorsk)를 고려한 법규명령을 규정한다. 노르웨이어의 기본 형식은 쓰기 교육과 쓰기 학습에 사용된다. 8학년부터는 학생이 스스로원하는 노르웨이어의 기본적인 쓰기 형식을 선택한다. 구두 지도 시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언어 형식을 결정한다. 교직원과 학교임원진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해야한다. 학부모가 7학년까지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 노르웨이 언어 형식을 결정한다. 8학년부터는 학생들 스스로가 사용할 언어를 직접 결정한다. 노르웨이어로 구성되어야한다. 한 기초 지자체에 1학년에서 7학년사이의 기초 지자체가 결정하는 언어 형식 외의 언어로 지도받기 원하는 학생이 적어도 10명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학생 그룹에속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적어도 6명의 학생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학생들 이 그 기초 지자체에서 몇 몇 다른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2장 초·중학교<br>(The primary and<br>lower secondary<br>school) | 제5조 초·중학교에<br>서 노르웨이어의 형식<br>(Forms of Norwegian<br>in primary and lower<br>secondary education)             |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부모가<br>어느 학교가 주된 언어 형식으로<br>가르칠 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br>1학년부터 4학년까지 노르웨이어<br>다른 언어로 수업하는 새 학교로<br>전학하는 학생들은 계속 기존의 언<br>어로 지도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제6조 초·중학교 수<br>화지도<br>(Sign language instruc-<br>tion in primary and lower<br>secondary education)           | 전문 진단에 근거하여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화로 진행되는 초·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할당된 교육의 내용및 수업 시수는 이 법의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초 지자체가 학생의 지역 학교가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교육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청각장애 미취학 아동은 그와 같은교육이 필요하다. 정부부처가 추가적인 법규명령을 규정한다. 기초 지자체가 첫 번째와 세 번째문장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전문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   | 제7조 핀란드 이주민<br>학생 대상 핀란드어<br>수업<br>(Instruction in Finnish<br>for pupils with a Kven-<br>Finnish background) | Troms와 Finnmark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핀란드 이주민 학생 중 적어도 3명이 요구할 경우, 학생들은 핀란드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의 내용과 할당된시간은 이 법의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8학년부터 학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 제7조 핀란드 이주민<br>학생 대상 핀란드어<br>수업<br>(Instruction in Finnish<br>for pupils with a Kven-<br>Finnish background) | 생들은 핀란드어로 교육받을 것인<br>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br>학교에서 담당 교사에 의한 교육을<br>제공할 수 없을 경우 첫 번째 문장<br>에 따른 대체 교육 형식을 고려한<br>법규명령을 정할 수 있다.   |
|     | 제8조 소수민족학생 대<br>상 개별화 언어교육<br>(Adapted language edu-<br>cation for pupils from<br>language minorities)       | 모국어가 노르웨이어나 사미어 이외의 언어인 초·중학교 학생들은학교의 일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노르웨이에 능숙해질 때까지 노르웨이어로 개별화 교육을받을 권리를 가진다. 필요시, 해당학생들은 또한 모국어 수업이나 이중 언어를 사용한 교과 수업, 또는둘 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 제9조 학교규칙 등<br>(School rules, etc.)   | 기초 지자체는 각 초·중학교의 규율에 대한 법규명령을 정해야 한다. 그 법규명령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학생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그 법규명령은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조치 및 행동규칙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 규칙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노르웨이의법률관보(Norwegian Legal Gazette)의출판 관련 공공행정법(the Public Administration Act)의 제38조 첫 번째 문장 (c)에 규정된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체벌이나 굴욕적인 형태의 조치가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2장 초·중학교<br>(The primary and<br>lower secondary<br>school) | 제9조 학교규칙 등<br>(School rules, etc.)                                      | 퇴학조치를 포함한 징계조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생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   | 제10조 퇴학 조치<br>(Exclusion from the tea-<br>ching)                        | 기초 지자체는 학교규칙을 준수하<br>지 않는 8학년~10학년 학생에게는<br>최대 3일간 그리고 1학년~7학년<br>학생에게는 개별적 기간이나 당일<br>내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도<br>록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규<br>칙에 규정할 수 있다.<br>교장이 그 학생의 담임교사와 논의<br>후에 퇴학조치 여부를 결정한다.<br>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른 징계조치<br>가 고려되어야 한다. 1학년~7학년<br>학생이 당일 퇴학조치를 받기 전에<br>학부모에게 먼저 공지되어야 한다.<br>기초 지자체가 결정하지 않는다면,<br>교장이 담임교사에게 2시간으로 제<br>한된 한 수업 동안 수업참여 불가<br>조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   | 제11조 의무 교육에서<br>의 휴학<br>(Leave of absence from<br>compulsory education) | 학생이 신청할 경우, 기초 지자체는 각 학생에게 2주까지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노르웨이 교회 밖의 종교적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신청할 경우 그들의 종교집단이 경건하게 기념하는 날에 결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학생이 복학해서 기존수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2장 초·중학교<br>(The primary and |  | 휴학기간동안 학비를 지불해야 한<br>다는 조건이 따른다.  |
| lower secondary school)       | 제12조 사립 초·중학교<br>(Privat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 사립 초·중학교는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킬 때 허가받을 수 있다. 무허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자들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법규명령이 국제법에서 노르웨이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이 법의 제1조 제1항, 제3항, 제2조제3항, 제3의1항과 제4항, 그리고해당 법규명령이 사립 초·중학교의 내용과 평가에 적용된다. 사립 초·중학교의 경우, 제2조 제2항 제5항 첫 번째~세 번째 문장, 여섯 번째 문장, 제9항~11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항~6항, 제9장의1제10조 제1항, 제6항, 제9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4항, 제7항, 제10항, 제13조 제3항의2, 제7항의1, 제10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3항, 그리고 제4항이 또한 적용된다. 노르웨이의 외국 및 국제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장에 규정된 요건으로부터 면제시킬 수 있다. |
|                               | 제13조 홈 스쿨에 대<br>한 이 법의 적용                                      | 법규명령이 국제법상 노르웨이의 의<br>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제1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2장 초·중학교<br>(The primary and<br>lower secondary |  | 조 제1항, 제3항, 제2조 제3항, 제4항<br>과 해당 법규명령이 초·중학교 홈<br>스쿨의 내용에 적용된다.  |
| school)  | 제14조 브라유 점자<br>지도 등<br>(Braille instruction, etc.)   | 시각장애 학생들은 Braille 점자를<br>사용한 교육과 필요한 도구에 대한<br>권리를 가진다. 대상 학생들은 또<br>한 등하교시 필요한 비용과 오리엔<br>테이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교<br>육의 기간과 내용은 이 법의 제2조<br>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한 법규명령<br>에 규정되어 있다. 이 비용 관련 결<br>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 진단이<br>이루어져야 한다. |
|  | 제15조 초·중학교 공<br>교육 무상에 대한 권리<br>(Right to free public<br>primary and lower secon-<br>dary education)   | 학생들은 공립학교의 초등교육 및<br>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br>권리가 있다. 기초 지자체는 초·<br>중학교 교육에 관련된 비용, 예를<br>들면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비,<br>학교 정규시간 동안의 교통비, 학<br>교 체험활동비, 수학여행이나 초·<br>중학교 교육의 일부인 외부활동 비<br>용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요구<br>할 수 없다.          |
| 교육 및 훈련  | 제1조 고등학교 교육<br>에 대한 권리<br>(Right to upper secon-<br>dary education and tra-<br>ining for young people) | 초·중학교 교육을 마쳤거나 그와<br>동등한 자격을 인정받는 학생들은<br>3년간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br>받을 권리를 가진다. 3년 이상의 지<br>도 기간을 요구하는 과목은 학생들<br>이 교과과정에 따라 규정된 지도기<br>간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3장 고등학교<br>교육 및 훈련<br>(Upper secondary<br>education and tra-<br>ining) |  | 다. 15세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접수한다.<br>학생과 수습교사들은 이 법과 법규명령에 근거 교육에 대한 권리를<br>가진다. 이 권리는 24세에 이르기<br>전에 훈련체계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제공될 때 5년이나 6년간<br>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
|   | 제2조 고등학교 수업<br>시수<br>(Time framework for<br>upper secondary educa-<br>tion and training) | 정부부처가 수습교사의 수습기간을 포함한 고등학교의 전체 수업시수에 대한 법규명령을 규정한다.수업 시수 할당은 학년(school year)의 연속 45주간 38주 이하로 할당되어서는 안 된다. 광역 지자체가 학년기간 동안 수업일과 공휴일을 고려한 법규명령을 규정한다. 그 법규명령은 국가시험에 적용되어야한다. 노르웨이 법적규정 집행을 고려한 공공행정법 제38조 첫 번째 문장 (c)에 규정된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부처가 학생들의 일일 수업시수와 휴식시간 관련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
|   | 제3조 고등학교 수학<br>연한<br>(Organization of upper<br>secondary education and<br>training)      |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입학 자격,<br>취업이나 부분적인 능력으로 연장<br>되어야 한다.<br>학교 교육은 1학년에서 3학년으로<br>구성된다. 각 학년은 보통 1년 과정<br>이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교육 및 훈련<br>(Upper secondary | 제4조 고등학교 교육<br>과정 및 평가<br>(Content and assessment<br>in upper secondary edu-<br>cation and training)<br>제5조 수습기간을 거<br>치지 않은 교원에 대<br>한 평가 |   |
|                             | (Trade and journeyman's examinations without apprenticeship and schooling)   |   |
|                             | 제6조 보충 교육<br>(The follow-up service)   |   |
|                             | 제7조 학교규칙 등<br>(School rules, etc.)   |   |
|                             | 리 상실<br>(Exclusion from the tea-   | 광역 지자체가 학교규칙을 심각하<br>게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한 학생에<br>게 최대 5일간 퇴학조치를 당할 수<br>있다는 학교 규칙을 규정할 수 있<br>다. 교장이 학생 담임교사와 논의<br>후 이 문장에 근거 학생의 퇴학여<br>부를 결정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br>가 달리 결정내릴 경우, 교장이 교<br>사에게 2시간으로 제한된 수업 참<br>여 불가 결정권에 대한 권한을 부<br>여할 수 있다.<br>학생이 학교 업무 환경을 방해하거나<br>교칙을 위반하고 본인의 의무에 대한<br>과실이 있을 경우, 그 학생은 그 해 |

| 장 및                         | <br>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교육 및 훈련<br>(Upper secondary | 제8조 퇴학조치 및 권<br>리 상실<br>(Exclusion from the tea-<br>ching and loss of rights)            | 동안 퇴학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br>그 조치와 관련하여, 광역 지자체는<br>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고등학교 교<br>육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br>다고 결정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br>는 학생이 퇴학조치를 받거나 고등<br>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는<br>안 된다는 이 문장에 근거한 결정<br>권을 학교부처에 부여할 수 없다.<br>퇴학조치나 권리박탈의 결정을 내<br>리기 전에 학생을 교화시키기 위한<br>다른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br>성의 여부를 진단해봐야 한다.   |
|                             | 제9조 고등학교의 수<br>화지도<br>(Sign language instru-<br>ction in upper secon-<br>dary education) |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수화를 주<br>언어로 사용하고 전문 진단에 따라<br>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두<br>번째 문장에 규정된 수화 언어 환<br>경에서 수화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br>거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수화 통역<br>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br>가진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br>고자 하는 성인에게도 제 3조 제1<br>항에 근거한 권리를 제외하고 동등<br>하게 적용된다. 광역 지자체에 의<br>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 진<br>단이 제출되어야 한다.<br>이 법의 목적으로, 수화 환경이라<br>는 용어는 수화 사용과 청각장애<br>학생들을 위한 수화를 통한 특별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3장 고등학교<br>교육 및 훈련                      |   | 개별화 교육 조항을 갖는 학교를<br>의미한다.  |
|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 제10조 브라유 점자<br>지도 등<br>(Braille instruction, etc.)  | 시각장애 학생들은 Braille 점자를<br>사용한 교육과 필요한 도구에 대한<br>권리를 가진다. 해당 학생들은 또<br>한 등하교시 필요한 비용과 오리엔<br>테이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교<br>육의 기간과 내용은 이 법의 제2조<br>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한 법규명령<br>에 규정되어 있다. 이 비용 관련 결<br>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 진단이<br>이루어져야 한다.            |
|  | 제11조 사립 고등학교<br>에 대한 국제적 동의<br>(International agreement<br>concerning private upper<br>secondary schools) | 정부부처가 국제적 동의하에 사립<br>고등학교를 허가할 수 있다. 그 허가<br>에 관련해서, 정부부처는 교육법의<br>요구사항 및 이 법에 의해 규정된<br>법규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  | 제12조 소수민족을 위한 언어교육 (Adapted language education for pupils from language minorities)                       | 모국어가 노르웨이어나 사미어 이외의 언어인 초·중학교 학생들은학교의 일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노르웨이에 능숙해질 때까지 노르웨이어로 개별화 교육을받을 권리를 가진다. 필요시, 해당학생들은 또한 모국어 수업이나 이중 언어를 사용한 교과 수업, 또는둘 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국어 교육은 외부 학교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 담당 교직원이 모국어 교육과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교과 수업을 진행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   | 할 수 없을 경우, 광역 지자체는 학<br>생들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다른<br>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 의 고등학교 교<br>육 및 훈련<br>(Upper secondary<br>education and tra- | 제1조 수습 및 훈련<br>후보자의 정의<br>(Definition of the terms<br>apprentice an training<br>candidate)                                    |  |
| ining in enterprises)  | 제2조 수습 및 훈련 후<br>보자의 특권 및 의무<br>(Special rights and obli-<br>gations for the appren-<br>tice and the training can-<br>didate) |  |
|  | 제3조 훈련 제도에 대<br>한 승인<br>(Approval of training<br>establishments)  |  |
|  | 제4조 훈련 제도에 대한 권리와 의무<br>(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aining establishment, etc.)                                      |  |
|  | 제5조 수습기간을 거<br>치지 않은 교원에 대<br>한 평가<br>(Apprenticeship contract<br>and training contract)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의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br>(Upper secondary<br>education and tra-<br>ining in enterpri- | (Amendment and rescission of the apprenticeship contract and tra-   |  |
| ses)   | 제7조 개인 훈련제도<br>에 대한 내부 조정<br>(Internal control in the<br>individual training esta-<br>blishments)                             |  |
|  | 제8조 직업교육 및 훈<br>런에 대한 지자체의<br>의무<br>(The county authority's<br>duties concerning voca-<br>tional education and tra-<br>ining) |  |
| 및 훈련<br>(Education and t-<br>raining organised                                 | 육에 대한 권리<br>(The right to primary   | 초·중학교 교육을 받는 성인들은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 한 이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보통 성인 대상 초·중학교 이수 증명서를 획득하기위한 필수과목을 포함한다. 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화 되어야한다. 교육 및 수업자료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장 및 조의 제명 규율 내용                                |  |  |
|--|--|--|
| 경 옷 소의 세경<br>                                  |  | 11 ½ ' 11 <del>8</del>   |
| 및 훈련<br>(Education and t-<br>raining organised | 수교육에 대한 권리   | 성인 대상 일반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인들은 특별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기본 기술 개발이나 유지를 위한 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성인들은 그러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이 조항에 근거한 교육의 경우 제5조 제1항 마지막 문장을 제외한 세번째 문장, 제5조 제3항~제6항에따라 적용된다.   |
|  | 제3조 고등학교 교육<br>에 대한 권리<br>(The right to upper se-<br>condary education and<br>training for adults) | 초·중학교 교육이나 그에 동등한 과정은 이수했지만 고등학교 교육 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들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첫 번째 문장은 25세가 되는 성인들에 게 적용된다. 성인 대상 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장거리 교육시설을 통해서도 충족되어질 수 있다. 정부부처가 누가 이 권리, 입학허가, 순위, 그리고 선호도에 대한 권리에 합당한지에 대한 규정을 정한다. 고등학교 교육에 입학 허가를 받은 성인들은 모든 수업을 이수할 권리가 있다. 이는 첫 번째 문장에 근거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용된다. 교과과정이 3년보다 긴 교육 기간을 규정하는 과목의 경우, 고등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성인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4a장 성인교육<br>및 훈련<br>(Education and t-<br>raining organised<br>especially for adu-<br>lts) | 제3조 고등학교 교육<br>에 대한 권리<br>(The right to upper se-<br>condary education and | 은 교과과정에 규정된 기간에 따른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공립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광역 지자체는 고등학교교육에서 교육 관련 서면 및 디지털 자료에 대한 의무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성인들은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 광역지자체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성인들에게 기타 개인적인 수업에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요구할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성인들은 능력자격에 대한권리를 갖는성인들은 능력자격에 대한권리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지자체나 노르웨이 노동복지행정부에서 언급할 경우 형식적인 혹은비형식적인 능력진단을 받아야한다. 정부부처가 추가 법규명령을 규정할수 있다. 광역 지자체가 형식적인, 비형식적인 등학교 능력 자력을 발행해야한 단구성할수있다. |
|  | ·중등 교육 및 훈련  | 제13조 제1항부터 제13조 제3-1항,<br>그리고 제13조 제10항은 이 장에<br>근거한 교육에 적용된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4a장 성인교육<br>및 훈련<br>(Education and t-<br>raining organised<br>especially for adu-<br>lts) | (The duty of municipalities and county authorities to provide primary | 성인 대상 교육에 대한 의무를 충<br>족하기 위해서 기초 지자체와 광역<br>지자체는 초·중등교육을 제공하<br>는 성인 교육 협회, 원격 교육기관,<br>그리고 기타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br>지원을 해야 한다.<br>기초 지자체와 광역 자자체는 성인<br>들이 이수한 교육에 대한 문서를<br>수여받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해<br>야 할 의무를 가진다.<br>정부부처와 광역 지자체는 이 장에<br>따른 교육을 받을 성인이 만족스러<br>운 학습 환경과 교육을 위한 노력<br>을 기울이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할<br>수 있다.<br>정부부처가 평가, 평가에 대항한<br>항소, 시험 및 문서 관련 추가 법규<br>명령을 규정한다. |
|  | 드   | 초·중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br>학교로부터 4km이상의 거리에 거<br>주하는 성인들은 이 장에 근거 교<br>육을 받는 기간 동안 무상 교통지<br>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4a장 성인교육<br>및 훈련<br>(Education and t-<br>raining organised<br>especially for adu-<br>lts) |  | 장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교통이 필요한 성인들은 이 장에 근거교육받는 기간 동안 거리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학교 교통지원을 받을권리가 있다. 제7조~제14조가 적용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근거한 일일 교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초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시, 감독 관련 제7조 제1항 4번째 문장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13조~제14조가이 조항에 근거한 의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
|  | 제8조 상담<br>(Counselling)                                      | 제4의 1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는 성인들은 어떤 조항이 필요한 지 명확히 하기위해 상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 제9조 퇴학조치<br>(Exclusion from the<br>teaching)                 |   |
|  | 제10조 장학, 감독 및<br>항소<br>(Supervision, control and<br>appeals) |   |
|  | 제11조 시범활동<br>(Experimental activities)                       |   |
|  | 제12조 개별화 교육<br>(Adapted education)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5장 특수교육<br>(Special education) | 제1조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 (Right to special education)   | 일반 교육으로부터 만족스러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학생들은 특수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br>어떤 종류의 교육이 제공되어야하는가에 있어서 학생의 발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수업의 내용은 학생에게 실제적인 교육적 목표와 관련되어야 하고 다른 학생들과 전체적으로 관련된 수업으로서 학생이적절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전체 수업 시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2조 제2항과 제3조제2항 참조) |
|                                 | 제2조 <2000년 6월 30<br>일 법률에 의해 삭제<br>됨><br>(Repealed by Act of<br>30 June 2000 no. 63<br>(in force 1 Aug 2002,<br>pursuant to the Decree<br>of 26 April 2002 no.<br>424).)<br>제3조 전문가 진단<br>(Expert assessment)<br>제4조 특수교육에 대한 행정결정과정 세부<br>사항<br>(More details about administrative procedures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5장 특수교육<br>(Special education) | in connection with decisions concerning special education) |  |
|                                 | 적 상담서비스  | 각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는<br>교육적이고 심리학적인 상담 서비<br>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 서비스는   |
|                                 | chological counselling service)                            |  |
|                                 | 한 특별교육지도   | 특수 교육 지원을 받는 특수 장애 미취학 아동은 보조지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보조지원은 부모 대상 조언 관련 조항 제공을 포함한다. 보조지원은 유치원, 학교, 사회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혹은 별도로이루어질 수 있다. 보조지원은 또한 교육적이고 심리학적인 상담 서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5장 특수교육<br>(Special educa-<br>tion) |  | 비스 혹은 다른 전문 분야에 의해<br>제공 될 수 있다.<br>제5조 제4항의 특수 교육 지원의<br>경우 이 법의 두 번째 그리고 세<br>번째 문장에 적용된다. 이 법의 제5<br>조 제5항 두 번째 문장은 적용될<br>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
|                                      | 제8조 의료보건 서비<br>스(Health services)  | 정부부처는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br>들을 위한 의학 감독 및 지원 관련<br>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
|                                      | 제9조 교육지원에 대한 정부부처의 의무<br>(The duty of the State to ensure the availability of teaching aids) | 정부부처는 특수교육을 위한 교과<br>서 및 기타 교육 자료 마련을 지원<br>해야 한다.  |
| 제6장 사미족<br>교육<br>(Sami education)    | 제1조 정의<br>(Definitions)  | 현행 법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의가<br>적용되어야 한다:<br>1. 사미족(Sami): 사미 선거권을 행<br>사할 수 있는 사람(이 법의 제2조<br>제6항 사미의회 관련 기타 사미 법<br>률 참조), 동일하게 등록된 아동들<br>2. 사미(Sami): 북(North) 사미,<br>남(South) 사미, 혹은 룰레(Lule)<br>Sami 구역: 1)사미법의 제3조 제1<br>항에 근거한 사미 행정 구역, 2) 사<br>미 의회 후에 위원회의 왕에 의해<br>규정된 법규명령에 근거한 기타 기<br>초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의 일부<br>구역,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br>가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정 및<br>제6장 사미족<br>교육<br>(Sami education) |           | 사미 구역에서 초·중등 과정의 모든 아동은 사미어나 사미어 매체를 통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만약 기초 지자체에서 사미 구역 외의 출신인 적어도 10명의 학생이 사미어나 사미어 매체로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그 집단의 적어도 6명의 학생이 모이는 한 그런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기초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에서 하나내지 그 이상의 학교들에서 사미교육을 제공할지의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기초 지자체는 사미 구역의 모든 초·중등 과정의 아동이 사미어로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명령을 규정할수 있다. 사미 구역 외에, 초·중등 과정의사미 이동들은 사미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부처는 아동들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교사에 의해 그와 같은 교육이 제공될수 없을 경우 대체 형식의 교육관련 법규명령을 규정할수 있다. 8학년부터 학생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에 근거사미어 교육을 받을 지의 여부를 |
|  | 교 교육 및 훈련 | 스스로 결정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사미 학생들은 사미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부부처는 학생들이 재학하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6장 사미족<br>교육<br>(Sami education) | education and training) | 는 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교육받을 수 없을 경우 대체 형식의 교육 관련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정부부처는 특정한 수업이나 특정한 집단 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구체적인 사미어 과목에서나 사미어를 통한 교육을 제공해야한다는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는 또한 그러한 교육을 제공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내용                      | 제2조 제3항과 제3조 제4항에 근거한 교과과정 관련 법규명령은 사미인, 사미어, 문화, 그리고 시민의 삶관련 교육에 대한 조항을 요구할수 있다. 정부부처에 의해 결정된 개관 내에서 사미 의회는 그와 같은 교육의 내용 관련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정부부처는 사미 구역 내의 교육과사미 교육을 받는 사미 구역 외의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대상 특별교과과정 관련 법규명령을 규정할수 있다. |
|                                   | ` <del>-</del>          | 학교로부터 4km이상의 거리에 거<br>주하는 1학년~10학년 학생들은 무<br>상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br>통학하는 지역이 특히 위험한 지역<br>인 학생들은 거리에 무관하게 무상<br>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7장 교통지원<br>및 기숙사<br>(Transport and ac-<br>commodation) |  | 필요시, 학생들은 거리에 관계없이<br>무상 선박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br>가진다.<br>일일 교통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br>기초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기숙시<br>설을 제공해야 한다. 기숙사 시설<br>이용 기준은 나이, 장애, 통학 시<br>소요시간, 안전, 그리고 일일 통학<br>을 위해 교통수단 이용 시 과대 비<br>용이나 어려움을 겪는지의 여부에<br>대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의심<br>스러울 경우, 부모들이 학생이 교<br>통이나 기숙시설을 제공 받을지의<br>여부를 결정해야 한다.<br>기초 지자체가 기숙시설을 이용하<br>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감독한다. |
|   | 제2조 고등학교의 교<br>통지원 및 기숙사<br>(Transport and accommodation in upper secondary education) | 학교로부터 6km이상의 거리에서<br>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은 무상교통<br>지원이나 교통 지출의 모든 보상에<br>대한 권리를 가진다. 필요 시, 학생<br>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무상 선박<br>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br>정부부처가 학생들의 교통지원이<br>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br>특별한 경우를 언급하는 법규명령<br>을 규정할 수 있다.<br>정부부처가 학교 교통지원에 있어<br>서 학생의 안전 관련 추가 법규명<br>령을 규정한다.<br>광역 지자체는 일일 교통수단을 찾<br>기 어려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7장 교통지원<br>및 기숙사<br>(Transport and ac-<br>commodation) |  | 을 대상으로 기숙시설을 보장하는<br>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필요<br>시, 광역 지자체가 기숙시설을 세<br>워야 한다.   |
|   | 제3조 장애아 및 환자<br>학생의 교통지원<br>(Transport for disabled<br>and temporarily ill or<br>injured pupils) | 장애나 일시적 상해 혹은 질병으로<br>인해 교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br>통학거리에 상관없이 이 조항에 근<br>거한 권리를 가진다.<br>학교 아동 대상 보육시설에 있으면<br>서(교육법 제13조 제7항 참조) 장애<br>나 일시적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br>해 교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보<br>육시설과 학교 간 통학 시 교통지<br>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br>는 학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br>다. 이 권리는 집이나 보육시설과<br>학교 간의 통학거리에 상관없이 적<br>용된다. |
|   | 제4조 보호 및 장학 (Escort and supervision) 제5조 <2000년 6월 30일<br>법률에 의해 삭제됨>                            | 학생들은 통학 시 필요한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은 또한 매일 수업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동안 필요한 장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필요한 보호 및 장학은 또한 제7조 제3항 세 번째 문장에 근거한 학교 아동 대상 보육 시설과 학교 간 통학거리에 필요한교통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아동들에게 적용된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및 기숙사   | (Repealed by Act of 30 June 2000 no. 63 (in force 1 Aug 2002, pursuant to the Decree of 26 April 2002 no. 414)) |   |
|   | 위한 교통지원<br>(Transport for children  | 제5조 제7항에 근거한 특수 교육<br>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아동들<br>은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교통지원<br>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제1<br>항의 세 번째, 네 번째 문장과 제7<br>조 제4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제8장 교육조직<br>(Organization of<br>the teaching) |   |   |
|   | (Repealed by Act of 27 June 2003 no. 69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 (in force 1 Aug 2003, pursuant to the Decree of 27 June 2003 no. 774))    |   |
| 제9장 학교의 관<br>리·기능·시설  | 제1조 관리<br>(Management)  |   |
| · 수업교재<br>(School manage-<br>ment, functions,<br>equipment and<br>educational reso-<br>urces) | 제2조 상담 및 학교도<br>서관 편의시설<br>(Counselling and school<br>library facilities) | 학생들은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br>적 문제에 관련해서 필요한 상담에<br>대한 권리를 가진다.<br>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br>있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이와 관<br>런 추가 법규명령을 정할 수 있다.   |
|   | 제3조 시설<br>(Equipment)   | 학교는 필요한 시설, 기자재, 수업<br>교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   | 지원  | 노르웨이어 외의 과목에서 교과서<br>및 기타 수업 자재가 같은 가격에<br>Bokmal과 Nynorsk로 되어 있는 경<br>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경<br>우에는 정부부처가 이 법규명령으<br>로부터 예외를 만들어낼 수 있다.<br>노르웨이어와 사미어 교과서 및 동<br>일한 수업 자재는 공식 철자법에<br>맞아야 한다. Nynorsk버전은 학교<br>교과서 출판 시 표준 철자법에 맞<br>아야 한다. 여기서 "교과서" 라는<br>용어는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능력<br>함양 목적의 필수적인 부분을 달성<br>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모<br>든 서면 학습 자재를 가리킨다.<br>초·중학교에서 노르웨이어 과목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9장 학교의 관<br>리・기능・시설<br>・수업교재<br>(School manage-<br>ment, functions,<br>equipment and<br>educational reso-<br>urces) |  | 교과서의 독자들은 노르웨이어 형<br>식에서 충분한 자재를 포함시켜서<br>학생들이 Bokmal과 Nynorsk 두 언<br>어로 독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br>록 해야 한다.<br>학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사전과 일<br>반사전은 노르웨이어 위원회에 의<br>해 허가될 수 있다.<br>정부부처가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된<br>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자재 관<br>련 추가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br>첫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의 법규명<br>령은 사미어 교육 자재에 적용되지<br>않는다. |
|  | 제5조 학교부지<br>(School premises)<br>제6조 학교 내 광고<br>관련<br>(Concerning advertising<br>in schools) |   |
|  | 제1조 일반 요구사항<br>(General requirements)<br>제2조 물리적 환경<br>(The physical environment)            |   |
|  | 제3조 심리·사회적<br>환경<br>(The psychosocial envi-<br>ronment)                                      | 학교는 각 학생이 안전과 사화소속<br>감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br>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br>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9a장 학교환경 (The pupils' sc- hool environment) | 안전 증진을 위한 체 | 학생들은 학교 보건, 환경, 그리고 안전에 대한 계획과 체계적인 업무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 mation and right to state views)  |   |
|                                |   | 이 장의 조항은 또한 이 법에 근거<br>하여 학교 아동 대상 보육 시설에<br>도 적용되어야 한다.<br>광역 지자체는 학교 환경에 관한 |
|                                | (Regulations)   | 추가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
| 제10장 교직원<br>(The school staff) | 제1조 교직원의 자격<br>요건<br>(Qualification require-<br>ments for teaching staff)   |   |
|                                | 제2조 <2003년 6월 27<br>일 법에 의해 삭제됨><br>(Repealed by Act of<br>27 June 2003 no. 69<br>(in force 1 Jan 2004,<br>pursuant to the Decree<br>of 27 June 2003 no.<br>774)) |   |
| 제10장 교직원                       | 제3조 상설 학교캠프<br>의 교직원<br>(Staff at permanent<br>school camps)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The school staff)   | 제4조 게시판 광고<br>(Advertising of posts)  |       |
|  | 제5조 두 명 이상의<br>지원자에 대한 선발<br>(Selection between two<br>or more applicants)                          |       |
|  | 제6조 일시적 임명<br>(Temporary appointments)  |       |
|  | 제7조 수습교사<br>(Teaching practice positions in schools)  |       |
|  | 제8조 능력 향상<br>(Competence enhance-<br>ment)  |       |
|  | 제9조 경찰 신원조회<br>(Police certificate)   |       |
|  | 제10조 임금과 업무환<br>경에 대한 종합적 동의<br>(Collective agreements<br>concerning pay and<br>working conditions) |       |
| 제11장 학교참여<br>기구<br>(School bodies for<br>user participation) | 제1조 초·중학교 운<br>영위원회<br>(Coordinating commit-<br>tees at primary and lo-<br>wer secondary schools)   |       |
|  | 제1-1조 초·중학교<br>환경위원회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1장 학교참여<br>기구<br>(School bodies for<br>user participation) | (School environment committees at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       |
|  | 제2조 초·중학교 학<br>생회<br>(Pupils' councils at pri-<br>mary and lower secon-<br>dary schools)   |       |
|  | 제3조 <2003년 6월 27<br>일 법에 의해 폐지됨><br>(Repealed by Act of<br>27 June 2003 no. 69<br>(in force 1Aug 2003,<br>pursuant to the Decree<br>of 27 June 2003 no.<br>774)) |       |
|  | 제4조 초·중학교 학<br>부모회<br>(Parents' councils at pri-<br>mary and lower secon-<br>dary schools)   |       |
|  | 제5조 고등학교위원회<br>(School committees at<br>upper secondary schools)   |       |
|  | 제5-1조 고등학교 환<br>경위원회<br>(School environment<br>committees at upper<br>secondary schools)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1장 학교참여<br>기구<br>(School bodies for<br>user participation) | 제6조 고등학교 학생<br>회 및 회의<br>(Pupils' councils and<br>general meetings at up-<br>per secondary schools)            |       |
|  | 제7조 협력 제공<br>(Joint provisions)  |       |
|  | 제8조 광역 지자체 위<br>원회의 학생대표<br>(Pupils' representatives<br>in county boards)                                      |       |
|  | 제9조 국가 초·중등<br>교육 학부모회<br>(The National Parents'<br>Committee for Primary<br>and Lower Secondary<br>Education) |       |
|  | 제10조 예외<br>(Exemptions)  |       |
| 제12장 훈련체제<br>내 직업훈련 관<br>련부서<br>(Bodies associated           | 제1조 직업훈련협력<br>부서<br>(Body for collaboration<br>on vocational training)   |       |
| with vocational training in training                         | 제2조 자문위원회<br>(Advisory councils)   |       |
| establishments)  | 제3조 광역 지자체 직<br>업훈련위원회 및 직업<br>훈련위원회<br>(County vocational tra-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 ining boards and vo-<br>cational training com-<br>mittees)                                 |                                       |
| (Bodies associated with vocational training in training establishments)                 | 제4조 광역 지자체 직<br>업훈련위원회의 의무<br>(The duties of the co-<br>unty vocational training<br>board) |                                       |
|   | 제5조 교육과정<br>(Curriculum groups)  |                                       |
|   | 제6조 수습교원 평가항<br>소위원회<br>(Appeals board for craft<br>and journeyman's exa-<br>minations)    |                                       |
|   | 제7조 부서 및 위원회<br>의 구성<br>(Members of bodies,<br>councils and boards)                        |                                       |
| 자체, 광역 지자<br>체, 국가의 책무<br>(The responsibili-<br>ty of the munici-<br>pality, the county |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br>기초 지자체의 의무<br>(The duty of the muni-<br>cipality to provide pri-            | 에 따라 의무가 있는 학생 및 기타<br>사람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3장 기초 지<br>자체, 광역 지자<br>체, 국가의 책무<br>(The responsibili-<br>ty of the munici-<br>pality, the county<br>authority and the<br>State) |   | 는 지출에 대한 보상 관련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규정한다. 공립 초·중학교는 기초 지자체에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국가나 광역 지자체에서 초·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광역 지자체는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초 지자체 행정은 교육적 자격요건을 갖춘 학교 수준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   | 따른 기관에서의 초 · 중학교, 특수교육지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광역 지자체의 의무 (Duty of the county authority to provide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special educational assistance | 체는 정부부처의 결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그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한 비용의 보상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3장 기초 지<br>자체, 광역 지자<br>체, 국가의 책무<br>(The responsibili-<br>ty of the munici-<br>pality, the county<br>authority and the | 제3조 고등학교 교육  | 지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다른 광역 지자체의 아동 및 청소년 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 관련 법규명령을 규정한다. 광역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고등  |
| State)  | 및 훈련에 대한 광역<br>지자체의 의무<br>(Duty of the county<br>authority's obligation to<br>provide upper secondary<br>education and training) | 학교 모든 거주민들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에 부합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는 제3조 제1항이나 제4의1조 제3항에 근거한 권리를 제외한 지원자 대상 장소를 제공해야한다. 정부부처는 누가 광역 지자체의 거주민으로 고려되는지에 관련한 개인적인 사례에 법규명령이나 안내를 규정한다. 정부부처는 거주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구 고등학교 교육 관련 발생하는 비용을 환불하는 것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정부부처는 광역 지자체가 다른 지역구 지원자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교정시설 내에서의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부부처는 특별한 경우 교정시설 내의 기타 교육 관련 광역 지자체에게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국가 목표, 지원자의 희망 그리고 사회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필요, 다양한 연령 집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3장 기초 지<br>자체, 광역 지자<br>체, 국가의 책무<br>(The responsibili-<br>ty of the munici-<br>pality, the county<br>authority and the<br>State) |                                      | 단 대상 모든 분야의 학업, 교정시설의 교육, 복지, 그리고 의학 기관 및 특수교육에 대한 필요를 고려한 고등학교 교육 시설에 대한 계획 및 개발을 해야 한다. 공립 고등학교는 광역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국가나 기초 지자체가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초 지자체는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   |                                      | 업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기관의<br>환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부처  |
|   | 한 지자체의 의무<br>(The municipality's and |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생 대항 사건 보험을 제공해야 할의무가 있다. 정부부처가 사고 보험 관련 추가 법규명령을 규정할수 있다.   |

| 장 및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 제13장 기초 지<br>자체, 광역 지자<br>체, 국가의 책무<br>(The responsibili-<br>ty of the munici-<br>pality, the county<br>authority and the<br>State)  제4조 통학수단 제공<br>의 책임<br>(Responsibility for provi-<br>ding school transport,<br>etc.) | 기초 지자체는 특별히 통학길이 위험하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 지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초·중학교학생 및 성인 대상 교통 지원에 대한 의무가 있다. 기초 지자체는 제7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생들의 교통지원에 대한 권리에 따른 의무가있다. 기초 지자체는 유치원생, 초·중학생 및 성인 대상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광역 지자체가 제7장에 근거한조항에 따라 교통지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초 지자체가 광역 지자체의 교통지원을 받는초·중학교 학생 및 성인에게 일반이용 승객 대상 현(current) 교통비기준에 따라 교통지원을 체계화해야한다. 만약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교 교통지원을 체계화해야한다. 만약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교 교통지원을 체계화해야한다. 만약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교 교통지원을 체계화해야한다. 만약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교 교통지원을 제계화해야한다. 만약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가 학교 교통지원 체계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부처가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정부부처가이 법과 학교 교통지원 비용을환불하기 위한 거주지 지역구의 고등학교 교육 관련 교통지원 비용을환불하기 위한 거주지 지역구의 의무 관련 법규명령에 따라 기숙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하는 학생 대상 통학길 보호 및 기숙시설 |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3장 기초 지<br>자체, 광역 지자<br>체, 국가의 책무<br>(The responsibili-<br>ty of the munici-<br>pality, the county | 제5조 과일 및 채소급<br>식 무상제공에 대한<br>학교운영자의 의무<br>(Obligation of school   | 학교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무상으   |
| authority and the State)   | 제6조 음악 및 기타<br>문화 활동 관련 교과<br>(목)의 제공<br>(Provision of courses<br>in music and other cul-<br>tural activities) | 모든 기초 지자체는 다른 기초 지자체와 협력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학교 체계 및 지역 문화생활에 관련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음악 및 문화 활동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br>경찰 신원조회 관련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10조 제9항의 법규명령에 적용된다.   |
|  | 제7조 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br>(Day-care facilities for school children)   | 기초 지자체는 1학년~7학년에 재학 중인 특별지도가 필요한 아동과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등교 전이나 방과 후에 학교 아동에게 보육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은 아동의 나이, 기능적 수준 및 관심에 적합한 놀이 및 문화 레저 활동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아동들은 발달에 필요한 좋은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실내외공간이 목적에 맞아야 한다.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장 및 제13장 기초 지 자체, 광역 지자 체, 국가의 책무 (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ity, the county authority and the State)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1. 소유권  2. 아동 수용 담당자  3. 입학 허가 기준  4. 입학 허가 여부 공고 기간 및 허가 종료 공고 시간제한  5. 학부모 비용  6. 학생 당 지정된 놀이 활동 구역  7. 일일 개원 시간 및 연중 개원일 및 마감일  및 마감일  8. 직원채용 및 관리  보육시설이 학교와 관계되어 있을 때, 보통 교장이 대표를 맡는다. 정부처는 이 요구사항에서 예외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는 학부모에게 학교 아동 대상 보육시설 관련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신원조회 관련 요건에 대해서는 제10조 제9항의 법규명령이 적용된다. 기초 지자체는 이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학교 아동 대상 보육시설을 제공할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다른 담당자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부처가 학교 아동 대상 보육시설 관련 취장한 다른 당자가 학교 아동 대상 보육시설을 개정할 |
|  | 한 기초 지자체의 의무 | 수 있다. 기초 지자체가 1학년~4학년 학생 대상 숙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원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 gation to provide home-<br>work help)    | 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숙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신청여부는 자유다.<br>경찰 자격 관련 요건은 제10조 제9항의 법규명령에 적용된다.<br>정부부처가 숙제지원 관련 조항에 대한 추가 법규명령을 규정할 수있다.  |
|     | 제8조 오슬로 지자체<br>(Oslo municipality)       | 오슬로(Oslo) 지자체 또한 이 법에<br>근거 광역 지자체가 갖는 권리 및<br>의무를 가진다.  |
|     | 제9조 국가의 지원<br>(State support)            | 국가는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br>체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분<br>을 지원한다. 이 지원은 보통 정부<br>부처가 규정하는 법규명령에 따라<br>(연방정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br>정액 교부금으로 제공된다.   |
|     | 제10조 책임의 범위<br>(Scope of responsibility) | 기초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 그리고 사립학교 소유주는 제2조 제12 항에 따라 이 법에 근거 규정한 법 규명령과 교육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조 제12항에 근거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 그리고 사립학고 소유주는 이런 평가의 결과와 정부부처가 제 14조 제1항에 근거 실시한국가 질 평가에 근거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장 및 조의 제명   |  | 규율 내용  |
|---|--|--|
| 감독  | 제1조 광역 지자체의<br>장학 및 감독<br>(State supervision and<br>control)             |  |
|   | 제2조 기초 지자체의<br>홈스쿨 장학<br>(Municipal supervision<br>of home tuition)      |  |
| 제15장 공공행<br>정법의 적용. 정<br>보제공의 의무<br>(Application of         | 제1조 공공 행정법의<br>적용<br>(Application of the Pu-<br>blic Administration Act) |  |
| the Public Administration Act. Duty to provide information) | 제2조 항소부처관련<br>특별법<br>(Special provisions con-<br>cerning appeal bodies)  |  |
|   | 정보제공 의무  | 이 법에 근거 학교의 직원들은 근무 시 아동 복지 서비스의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는 환경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실패나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있을 경우(아동 복지 서비스 관련 1992년 7월 17일 법의 제4조 제10항~제12항 참조)나 아동이 심각한 행동장애를 보일 경우 (동법의 제4조 제24항 참조) 근로자들은 아무리 비밀이라 할지라도 아동 복지 서비스에 먼저 알려야 한다. 근로자들은 아동 복지 서비스 관련 1992년 7월 |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5장 공공행<br>정법의 적용. 정<br>보제공의 의무  |  | 17일 법에 대한 적용에 의무가 있는 부처에 의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
| (Application of<br>the Public Admi-<br>nistration Act. Du-<br>ty to provide in-<br>formation) | 제4조 사회서비스 정<br>보제공의 의무<br>(Duty to provide infor-<br>mation to the social<br>services) | 이 법에 근거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자체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근무 시 아동 복지 서비스의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는 환경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그 정보는 학생의 동의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고, 정보의 범위는 비밀에 대한 의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
| 정의 법적 효력  | 제1조 법적 효력<br>(Entry into force)  |   |
| 및 개정안 (Entry into force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mendments to other Acts)                | 제2조 경과규정<br>(Transitional provisions)  | 법의 효력을 발생할 시 영구 고용<br>된 초·중등학교 교직원은 퇴출되<br>지 않는다. 이 교직원들의 경우, 초<br>·중등교육 관련 1969년 6월 13일<br>법의 제24조 제1항 두 번째 단락과<br>제2항이 계속 적용된다.<br>법의 효력이 발생한 후로부터 5년<br>간 초·중등 교육 관련 1969년 6월<br>13일 법의 제17조 제4항 세 번째<br>단락에 근거한 관리 기구를 설립한<br>학교들은 제9의1조 두 번째 단락에<br>근거한 교장 관련 자격 요건으로부<br>터 제외되어야 한다.<br>제2의1조에 근거한 10년의 초·중<br>등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br>1991년과 그 이후에 출생한 학생에 |

부록1. 「초·중등교육법」[1998년 제정, 2011년 개정]

| 장 및  |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6장 경과규<br>정의 법적 효력<br>및 개정안<br>(Entry into force<br>and transitional |   | 게 적용된다. 다른 학생들은 9년의<br>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br>를 가지지만, 1학년을 앞서가기에<br>그들은 10학년에 초·중등학교를<br>이수한다. |
| provisions. Amendments to other Acts)                                  | 제3조 기타 법령의<br>폐지<br>(Repeal of other Acts)<br>제4조~제16c조 (생략)  |   |
|  | 제16d조 <1999년 12월<br>17일 법에 의해 삭제<br>됨><br>(Repealed by Act of<br>17 Dec 1999 no. 97<br>(in force 1 Jan 2000). |   |

부록2.「고등교육법」[1998년 제정, 2011년 개정]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제1장<br>법의 목적<br>및 범위<br>(Purpose<br>and Scope<br>of the Act) | 제1조 법의 목적<br>및 범위<br>(Section 1-1. Purpose<br>and scope of the<br>Act)                                  |  |
|   |  | 제2조 '종합대학<br>및 단과대학법'의<br>범위<br>(Section 1-2. The<br>Scope of the Act -<br>Universities and University) | 는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br>그리고 제3장 제1조에 따라<br>종합대학, 특성화 대학기관, |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부 및 장, 조의 제명 제1장 법의 목적 및 범위 (Purpose and Scope of the Act) | ③ 왕은 노르웨이 교육성과<br>관리청의 학력평가에 근거<br>하여 이 법의 특정 조항이<br>다른 교육기관에도 동일하<br>게 적용되어야한다고 결정<br>할 수 있다.<br>④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
|   |  | 정부부처는 이 법의 조항과<br>제한적인 교육적 또는 유기<br>적 실험과 관련한 법에 따라<br>규정된 법규명령으로부터 편<br>차를 결정할 수 있다.<br>⑤ 이 법은 왕국(the Realm)<br>내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대<br>학 및 단과대학의 활동에 적<br>용되어야 한다. 이 법은 왕<br>이 규정하지 않는 한 Sval-<br>baard와 Jan Mayen에 적용되<br>어야 한다. 왕은 지역 조건<br>에 따른 특별 조항을 규정할<br>수 있다. |
|   |  | ⑥ 이 법은 왕국 밖의 활동에 적용되지 않으나, 왕은 그런 활동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 법의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할수 있다. ⑦ 타국이나 국제기구의 동의하에, 이 법의 범위는 특정 분야의 의무 내에서 확장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다.   |

| 제1부 공통 조항 법의 목적 활동 음과 같이 이 보<br>(Part I. Joint 및 범위 (Section 1-3. The 증진해야 한다. provisions) (Purpose Institutions' Activi- 1 연구, 교육 및 1 업무, 실천적 of the Act) 기한 고등교육을 한다.   |   |
|---|---|
| ② 연구, 교육 명발 업무를 수행하다. ③ 제공된 자료로로 관리하고 작무 자료를 조사하면 연구, 교육 명발 업무의 결과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연구, 교육 명발 업무에 대한한 변화와 가치하여한다. ⑥ 교육기관의 되생의 회의 참여이을 만들어야한다. ⑦ 노르웨이 고등 구가 국제 연구, 고등교육 조항의 여하도록 지원해용 다른 종합대학학과 협력하고 관, 지역 사회 및 공공 행정, 그리와 교류해야한다. | 유 및 예술성 개<br>전적을 제공해야<br>유 및 제공해야 화를 적 하다.<br>유 및 전 한 및 전 한 한 및 전 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규율 내용  |  |
|--|--------------|--|--|
| 제1부<br>공통 조항                           | 제1장<br>법의 목적 |  | ⑨ 교육기관의 운영 체제에<br>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 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 제4조 사립교육기<br>관의 특별 의무<br>(Section 1-4. Speci-<br>al Responsibilities<br>of Individual Insti-<br>tutions) | ①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박사학위 분야에서 기초 연구 및 연구 훈련에 대한 특 |
|  |              | 예술의 자유   | 수업의 내용이나 이학적, 문                              |

|   | 부 및 장, 조의        | 규율 내용  |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 (Section 1-5. Academic and Artistic Freedom)             | 학적, 또는 과학적 발전 업무의 내용, 그리고 자체 업무와 관련하여 제재를 받지않을 수 있다. ② 이 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바에 의해 자체 교본을 고안할수 있어야 한다.                                |
|   |                  | 제6조 교육의 질<br>보장<br>(Section 1-6. Qua-<br>lity Assurance) | ①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br>질 보장을 위한 만족스러운<br>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br>수업에 대한 학생 평가는 질<br>보장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br>② 정부부처는 질 보장 체계<br>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br>정할 수 있다. |
|   | 노르웨이 교<br>육의 질 증 | sibilities and Auth-                                     | 및 평가에 의해 전문적으로<br>주(state) 자치기구 이어야  |

|   | 부 및 장, 조9        | 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노르웨이 교<br>육의 질 증 | 기 제명                | ② 교육성과관리청의 의무: 교육기관 체계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 교육기관의 인증수업 관련 조항에 대한 인증이미 주어진 인증에 대한 재검토 정부부처는 교육성과관리청에게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진단에의 중요성 관련 평가를수행하도록 지시할수 있다.이법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부여한 자격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인정 ③ 정부부처는 정부부처가발행한 규칙에 규정된바이상의 것으로 교육성과관리청에게 지시하지 않고, 교육성과관리청의 인증을 거부하지 않는다. ④ 교육성과관리청은 평가를 공적이고, 교육성과관리청은 평가를 공적이고, 교육성과관리청은 평가를 |
|   |                  |                     | 하는 모든 평가는 공적이고,   |
|   | 제2장              | 제2조 노르웨이<br>교육성과관리청 | ① 교육성과관리청은 교육성<br>과관리청의 활동과 결정에   |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노르웨이 교<br>육의 질 증 | 위원회<br>(Section 2-2.  | 대한 전반적인 의무를 가지는 위원회가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왕(the King)이임명해야하고, 8명으로 구성되어야한다. 구성원 중한명은 학생이어야한다. 구성원 중한명은 교육성과관리정의 직원 중에서임명되어야하고 직원 관련 문제에있어서투표에대한권리를가져야한다. 직원 및 학생위원의 개인대리인들을 임명해야한다. 정부부처는위원장을임명해야한다. 학생위원의임기는 4년이어야한다.학생위원의임기는 2년이다. ④ 위원회의구성원은현법에근거한교육기관에서기관의장을 맡지않는다. ⑤ 위원회는정해진기단용 명령하야한다.임기는 6 |
|   |                  | 제1조 수업 조항<br>및 교육 기관에 대<br>한 승인<br>(Section 3-1. Acc-<br>reditation of Course<br>Provision and Insti- | 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br>평가하는 의무로 해석된다.<br>인증은 교육성과관리청이 임  |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 tutions)  | 는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br>인증은 제2조 제2항과 제3<br>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의 교<br>육기관이 규정한 조항에 대<br>한 전제조건이다.<br>② 정부부처는 인증이 근거<br>된 기준 설립과 절차 관련<br>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br>③ 교육성과관리청이 만약<br>교육기관이 더 이상 인증에<br>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br>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확한<br>문제에 대한 시간제한이 허락<br>되어야 한다. 인증에 대한 자<br>격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못<br>할 경우, 교육성과관리청은<br>인증을 취하해야 한다. |
|   |              | 제2조 학위, 전문<br>훈련 자격 및 명칭<br>(Section 3-2. De-<br>grees, Professional<br>Training Qualifica-<br>tions and Titles)<br>제3조 학위 승인<br>기관<br>(Section 3-3. Aca-<br>demic Authorities)<br>제4조 다른 자격<br>기준의 학위 인정 |   |

|                                | 부 및 장, 조9   | 규율 내용   |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 | Decisions - | (Section 3-4. Credit<br>and Recognition of<br>Other Qualifications)   |   |
| provisions)                    | ion)        | 제5조 시험 면제<br>(Section 3-5. Ex-<br>emption from an<br>Examination or Test)                                       |   |
|                                |             | 제6조 고등교육 입<br>학 자격요건<br>(Section 4-6. Edu-<br>cational Qualifica-<br>tions for entrance to<br>Higher Education) |   |
|                                |             | 제7조 입학 허가<br>(Section 3-7. Student Admission)   |   |
|                                |             | 제8조 수업<br>(Section 3-8.<br>Teaching)  |   |
|                                |             | 제9조 평가<br>(Section 3-9. Ex-<br>aminations and Mar-<br>king)   |   |
|                                |             | 제10조 평가에<br>대한 권리<br>(Section 3-10. The<br>Right to Sit Exami-<br>nations)                                      | ① 입학자격요건(제3조 제6항)과 교과 과정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 |

|   | 부 및 장, 조 <sup>9</sup>                          | 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부 및 장, 조약 (Academic Decisions - Accreditation) | 제11조 졸업장<br>(Section 3-11.<br>Diplomas) | 규율 내용 다. 이는 또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수업에 입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② 이 조항에 근거한 시험에 대한 등록 인증은 시험 후보자가 필수과목이나 필수 실습과정 이수 여부에 따라 결렬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관련 규칙을 규정하고,학생이 입학허가 받지 않은 책로 시험을 등록하는 별도 의 마지막 날짜를 규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해당수업에 입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인 시험 후보자가 그 특정 보류하는데 필요한 여비나 작습 프로그램에 필요 한 여비나 학습 프로그램에 필요 한 의나 학습 프로그램에 필요 한 의사를 규정할 수 있다. 정부부처는이 조항에 따른 비용 관련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

|                                | 부 및 장, 조9                              | 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 | 제4장<br>학생의 권리<br>와 의무                  | 제1조 전교생<br>(Section 4-1.<br>Student Bodies)   |   |
| provisions)                    | (The Students' Rights and Obligations) | 제2조 학습 계약<br>(Section 4-2. Study<br>Contract) | 교육기관과 60학점 이상의<br>수업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br>생사이에 학습 계약이 준비<br>되어야 한다. 학습 계약은<br>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책<br>임과 의무 그리고 교육기관<br>과 동기 학생들에 대한 학생<br>의 의무 관련 조항을 포함해<br>야 한다. 정부부처는 학습<br>계약의 내용 관련 규칙을 규<br>정할 수 있다.   |
|                                |  | 제3조 학습 환경 (Section 4-3. Learning Environment) | ① 위원회(the board)는 학생<br>의 학습 환경에 대한 전반적<br>인 의무를 가진다. 학생 복<br>지 기관과의 협력 하에 위원<br>회는 좋은 학습 환경에 맞는<br>적절한 조건을 제공하고 교<br>육기관의 학습 환경을 향상<br>시켜야 한다.<br>② 위원회는 물리적 및 정신<br>적 학습 환경을 포함한 교육<br>기관의 학습 환경 조성에 대<br>한 의무를 가지고 학생의 보<br>건, 안전, 그리고 복지를 충<br>족시켜야 한다. 물리적 학습<br>환경은 다음 사항들이 학생<br>활동하기에 적합하게 고안 |

|   | 부 및 장, 조의     | 리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제4장<br>학생의 권리 | 시 제명 | 되어야 한다 부지, 접근 경로, 계단 - 조명, 실내 소음 및 공기 - 부지의 청결함 - 상해 및 사고 방지 - 안전한 장비 - 장애학생들을 위한 부지, 접근 경로, 위생시설, 기술 장비 등 - 양성 평등한 학습 환경 -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학습 환경 등 2005년 4월 1일 ③ 교육기관에 제1항 및 제2 항에 규정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할 학습 환경 위원회는 학습 환경 및 학생의 위원회는 학습 환경 및 학생의 안전과 복지 발전을 위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the board)는 또한 환경위원회(the committee)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학습 관경 위원회는 학생들의 교 |
|   |               |      | 항에 규정된 조항을 시행하   |
|   |               |      | 기 위해 지원할 학습 환경   |
|   |               |      | 의 안전과 복지 발전을 위한  |
|   |               |      | 회(the board)는 또한 환경  |
|   |               |      | 무를 규정할 수 있다. 학습  |
|   |               |      | 육기관의 학습 환경에 대한<br>불만을 인지해야 한다. 학습  |
|   |               |      | 환경 위원회는 그와 같은 문<br>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
|   |               |      | 있다. 노르웨이 노동 조사기<br>관(the Norwegian Labour Ins-   |
|   |               |      | pection Authority)이 규정한  |

|   | 규율 내용   |
|---|---|
| 공통 조항 (Part I. Joint provisions) (The Students' Rights and Obligations) | 다할 내용  각각의 법규명령 및 지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학습 환경 위원회는 위원회 에 직접 보고하고 학습 환경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학생과 교육기관은 위원회에 각각의 대표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기 관과 학생 대표 중에서 매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 업무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제1 조-제6조에 따른 질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의 내부 체계의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가능한 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습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개별 수업의 학업 자격 요건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노르웨이 노동 검사 기관 (The Norwegian Labour Inspection Authority)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독한다. 감독 및 강제적 조치 관련 업무 환경법의 제7장의 조항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이 조항에 부합 하도록 감독 및 강제적 조치 |

|                            | 부 및 장, 조9   | 규율 내용  |  |
|----------------------------|---|--|--|
| 제1부<br>공통 조항               | 제4장<br>학생의 권리   |  | 관련 보조 조항을 포함하는<br>법규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  |
| (Part I. Joint provisions) | 와 의무<br>(The Studen-<br>ts' Rights<br>and Obliga-<br>tions) | 제4조 교육기관의<br>학생 대표<br>(Section 4-4. The<br>Students' Represen-<br>tation in the Insti-<br>tution's Bodies) |  |
|                            |   | 제5조 출산 및<br>육아를 위한 휴학<br>(Section 4-5. Right<br>to Parental Leave)   | ① 학업 중 출산하는 학생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학생은 휴학 전 학년에 맞는 적절한 학년으로 복학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노동환경법(the Working Environment Act)의 제31조와 제32조가 적용된다. ②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휴학후 가능한 한 빨리 복학하여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   | 제6조 비밀유지에<br>대한 학생의 의무<br>(Section 4-6. Obli-<br>gation of Students<br>to Observe Secrecy)                 |  |
|                            |   | 제7조 시험 취소<br>(Section 4-7. Annul-<br>ment of Examinations<br>or Tests)                                     |  |

|   | 부 및 장, 조9                | 규율 내용  |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 제8조 퇴학 (Section 4-8. Exclusion) 제9조 범죄로 인한<br>퇴학 (Section 4-9. Exclusion owing to Criminal Offences - Certificate of Good Conduct) |   |
|   |                          | 제10조 적성평가에<br>따른 퇴학<br>(Section 4-10. Ex-<br>clusion Following<br>Aptitude Assessment)   |   |
|   |                          | 제11조 법정의 퇴<br>학조치 재심<br>(Section 4-11. Re-<br>view of Exclusion<br>Decisions by a Court<br>of Law)                                 |   |
|   | 제5장<br>이의제기<br>(Appeals) | 제1조 재심위원회<br>및 특별 국립 재심<br>기구<br>(Section 5-1. Appeals<br>Committee and Spe-<br>cial National Appeals<br>Body)                     | ① 대학교 및 단과대학은 위<br>원회의 판결에 따라 개별 판<br>결에 대항하는 항소와 학생<br>들이 제기한 항소를 다루기<br>위한 재심위원회를 설립해야<br>한다.<br>② 재심위원회는 개인 대리 |

|   | 부 및 장, 조9                | 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제5장<br>이의제기<br>(Appeals) |   | 인들과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장과 의장의 대리인은 항소법원의 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장과 의장의 대리인은 교육기관의 교직원이어서는 안 된다. 2명의 구성원은 학생들이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이사장과 교육기관 위원회의 구성원이아닐 수도 있다. ④ 재심위원회는 의장과 3명의 구성원이하늘 이름다. ⑤ 재심위원회의 판결이 마지막이다. ⑥ 정부부처는 재심절차 관련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⑦ 정부부처는 특정 분야에서의 개별 판결에 대항하는 항소를 다루는 국립 특별재심기구(special national appeals body)를 설립할 수 있다. |
|   |                          | 제2조 시험 관련<br>절차상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br>(Section 5-2. Complaints against Procedural Errors in Connection with Ex- | 차상 오류에 대한 불만을 표<br>현할 수 있다. 그 불만에 대<br>한 판결은 위원회나 교육기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규율 내용   |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제5장<br>이의제기<br>(Appeals) | aminations)   | 칠 경우, 그 오류표기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 오류가이미 제출된 시험지에 다시표기해서 고칠 수 있다면 재표기해야 한다. 현 조항에근거한 두 번째 평가에 부여된 표기는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항소될 수있다. ③ 표기에 대항하는 항소나그에 대한 설명요청이 있을경우, 이 조항에 따른 항상이설명을 받거나 항소가 판결날때로부터라고 여겨진다. ④ 위원회나 위원회의 재심위원회가 후보자 2명이상의성취도나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공식적인오류를 발견할 경우, 새평가를 수행하게 하거나 새시험을 치르게 하는 판결을 내릴수있다. |
|   |                          | 권리<br>(Section 5-3. Complaints Regarding<br>Marks Awarded - | ① 학생은 시험에서의 표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었다. 구두평가나, 실습평가같은 설명은 오류표기의 공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한다. 다른 평가에 대한 설명요청은 그 후보자가 표기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일주  |

| -            | 부 및 장, 조의                          | 세명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 | 부 및 장, 조의 제5장<br>이의제기<br>(Appeals) | 에명  인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표기 공시로부터 3주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설명은 후보자가 요청한후 2주 내로 주어져야만 한다. 설명에는 그 평가에 대한일반원칙과 후보자의 능력평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설명은 평가자의판단에 따라 구두나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평가에 대한 전면 안내서가 발간되었을 경우, 그 오류표기에 대한 판결 이후 학생들에게도 배포되어야 한다. ④ 시험 결과 공지 후 3주이내로 시험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재시험을 봐야 한다. 절차상오류에 대한 질의 형식의 불만이나 그 표기에 대한 설명요청에 있어서 설명 절차나평가 절차,이 호안에 근거한 항소에 대한 시간제한은학생이 설명을 들었거나 그항소가 마지막으로 판결났을때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⑤ 구두시험과 실습에 대해서는 시험 특성상 재심이 없 |

|                                | 부 및 장, 조의 | 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 |           |   | 우에만 가능하다.<br>⑥ 이 조항에 따른 재 표기<br>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
| provisions)                    | , -       | 제1조 일반<br>(Section 6-1.<br>General)   |   |
|                                |           | 제2조 양성평등<br>(Section 6-2.<br>Gender Equality)   |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교육기관의 채용 시 모든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           | 제3조 학업적인 글<br>의 게시에 대한 홍<br>보 및 약속<br>(Section 6-3. Adver-<br>tisement of and Ap-<br>pointments to Aca-<br>demic Posts) |   |
|                                |           | 제4조 규정된 연간<br>일정에 따른 임명<br>(Section 6-4. Appo-<br>intment for a Fixed<br>Term of Years)                                 |   |
|                                |           | 제5조 학계의 일시<br>적인 임명<br>(Section 6-5. Tem-<br>porary Academic Ap-<br>pointments)   |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Chapter 6.  | 제6조 부가적인 게<br>시의 특정 종류에<br>대한 특별 조항<br>(Section 6-6. Spe-<br>cial Provisions for<br>Certain Types of<br>Additional Post)<br>제7조 특정한 직업<br>명(titles) 사용에 대<br>한 예외적인 권리<br>(Section 6-7. Ex-<br>clusive Right to<br>Use of Certain Oc-<br>cupational Titles) |   |
|   | 제7장<br>기타 조항<br>(Miscellane-<br>ous Provisi-<br>ons) | 제1조 학비<br>(Section 7-1. Fees)   | ① 국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학위를 위한 일반 수업이나 전문가 훈련 수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요구하지않을 수 있다. 정부부처는특별한 경우이 조항의 예외규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립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은 국가 지원 학자금이 학생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state)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은 재정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부부처는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이 학생들에게 수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 규율 내용  |
|----------------|----------------------|--|--|
| 제1부            | 제7장                  |  | 업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
| 공통 조항          |                      |  | 있는 권리에 관한 법규명령   |
| (Part I. Joint | (Miscellane-         |  | 을 규정할 수 있다.  |
| provisions)    | ous Provisi-<br>ons) | 제2조 종합대학 및<br>단과대학의 명칭<br>보호<br>(Section 7-2. Prote-<br>ction of the Names<br>of Universities and<br>University Colleges)<br>제3조 국가공인 번<br>역사자격증<br>(Section 7-3. Licen-<br>ce to Practise as a<br>State Authorized T-<br>ranslator) |  |
|                |                      | 제4조 과학 소장품<br>담당자<br>(Section 7-4. Staff<br>of Scientific Collect-<br>ions)<br>제5조 연감의 기본<br>자료<br>(Section 7-5. Basic<br>Material for Alma-<br>nacs)<br>제6조 다른 법률과<br>의 관계  | 과학 작품을 소장 담당자는<br>개인 작품이나 유사품을 위<br>원회의 동의 없이 소장하거<br>나 개인 계좌로 무역거래를<br>해서는 안 된다.  ① 「공공행정법」의 제13조-<br>제13의5조의 비밀보호의무<br>관련 조항은 대학교 및 단과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 규율 내용   |
|--|--------------|---|---|
| 제1부<br>공통 조항<br>(Part I. Joint<br>provisions)  | 제7장<br>기타 조항 | ion to other Legis-<br>lation)  | 대학에 적용해야 한다. ② 제3조 제4항에 따른 교육학점인정 관련 결정, 제3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학생입학인증, 제3조 제10항에 따른 시험을 치를 수 있는권리, 제4조 제7항에 따른 시험 폐지, 그리고 제4조 제8항-제10항에 따른 퇴학조치는「공공행정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결정으로 여긴다. 이는제5조 제2항에 따른시험 관련 절차상 오류 대항 항소관련건에 대한 판결에 적용되기도 한다. ③ 대학교 및 단과대학은「양성평등법」의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구로 여겨져야 한다. |
| 제2부<br>사립 종합<br>대학 및 단<br>과대학<br>(Part II. Private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              | 제1조 교육기관의<br>운영 - 위원회<br>(Section 8-1. The<br>Institution's Mana-<br>gement - the Board)<br>제2조 권한의 위임<br>(Section 8-2. Dele-<br>gation of Authority)<br>제3조 국가 지원<br>(Section 8-3. State<br>Support) | ① 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br>을 충족하는 사립 대학교와<br>단과대학은 교육성과관리청  |

|   | 부 및 장, 조 <sup>9</sup>                                   | 의 제명   | 규율 내용   |
|---|---|--|---|
| vate Univer-  | 대한 기타<br>조항<br>(Chapter 8.<br>Miscellane-<br>ous Provi- |  | 이 승인한 수업의 운영비용<br>주정부 지원에 대한 권리를<br>왕에게 요청할 수 있다.<br>② 사립 대학교 및 단과대학<br>의 위원회는 매년 연간 재정<br>보고서와 활동 결과보고서<br>를 재출해야 하고, 다음 해<br>의 예산을 보고해야 한다.<br>③ 정부부처는 주정부 지원<br>을 받는 사립 대학교 및 단<br>과대학을 관리 감독한다. |
| 제3부<br>국립 종합<br>대학 및 단<br>과대학<br>(Part III. Sta-<br>te Universi-<br>ties and Uni- | 제9장<br>위원회<br>(The Board)                               | 제1조 교육기관 활<br>동에 대한 책임<br>(Section 9-1. Responsibility for the Institution's Activities) |   |
| versity Colleges)   |   | 책무<br>(Section 9-2. The<br>Boards Responsi-<br>bilities)                                 |   |
|   |   | 제3조 위원회의<br>구성<br>(Section 9-3. Composition of the Board)                                |   |
|   |   | 제4조 위원 선출<br>및 임명<br>(Section 9-4. Elect-  |   |

| 부 및 장, 조의 제명   |   |  | 규율 내용 |
|--|---|--|-------|
| 제3부  | 제9장   | ion and Appoint-<br>ment of the Board)                                     |       |
| 국립 종합 위원회<br>대학 및 단 (The Board)<br>과대학<br>(Part III. Sta-<br>te Universi-<br>ties and Uni- | 제5조 신뢰가 요구<br>되는 직위의 의무<br>(Section 9-5. Ob-<br>ligation to Accept<br>and Act in Posit-<br>ions of Trust) |  |       |
| versity Colleges)  |   | 제6조 위원회 회의<br>(Section 9-6. Board<br>Meetings)                             |       |
|  |   | 제7조 의결 정족수<br>및 다수결<br>(Section 9-7. Quo-<br>rum and Majorities)           |       |
|  |   | 제8조 위원회 해체<br>에 대한 권리<br>(Section 9-8. Right<br>to Dismiss the Boa-<br>rd) |       |
|  | 제10장<br>총장<br>(Rector.  | 제1조 총장<br>(Section 10-1. The<br>Rector)                                    |       |
|  | Director)   | 제2조 총장 선거<br>(Section 10-2. Election of the Rector)                        |       |
|  |   | 제3조 교육기관의<br>임원<br>(Section 10-3. The                                      |       |

| 부 및   | 장, 조의 제명  | 규율 내용 |
|---|---|-------|
| 제3부 제10 <sup>2</sup><br>국립 종합 총장<br>대학 및 단 (Rectoration of Part III. State Universities and Universities and University Colleges) 제11 <sup>2</sup> 임명 | Institution's Director)  Alax * Soon Soon Soon Soon Soon Soon Soon So |       |

|                               | 부 및 장, 조9                              | 규율 내용  |  |
|-------------------------------|--|--|--|
|                               | 다양한 조항<br>(Chapter 12.<br>Various Pro- | 제1조 외부 문제<br>(Section 12-1. Ex-<br>ternal Matters)<br>제2조 참여자<br>(Section 12-2. The<br>Parties)              |  |
| versity Colleges)             |  | 제3조 부지 관리<br>(Section 12-3. Property Management)   |  |
|                               |  | 제4조 다른 활동에<br>서의 협력 및 참여<br>(Section 12-4. Coo-<br>peration and Partici-<br>pation in other Ac-<br>tivities) |  |
| 제4부<br>기타 조항<br>(Part IV. Mi- |  | 제1조 효력 발생<br>(Section 13-1. Entry<br>into Force)   |  |
| scellaneous<br>Provisions)    | `                                      | 제2조 변경 조항<br>(Section 13-2. Transitional Provisions)   |  |
|                               |  | 제3조 다른 법률에<br>대한 개정<br>(Section 13-3. Amend-<br>ments to other Acts)   |  |
|                               |  | 제4조 이전 법률의<br>폐지<br>(section 13-4. Repeal of Earlier Acts)   |  |